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목 차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5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	35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부록]	
1. 미국 50개주 회의공개법명과 법령	83
2. 미국 회의공개법 번역문	87
3. 미국 회의공개법 원문	95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개요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보장하고자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회의공개법 및 운영 현황 소개하고, 둘째,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우리나라 법제 분석, 셋째, 회의록 생산 관련한 우리나라 지정회의 운영현황 분석한다. 넷째, 이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정회의 운영현황은 국무총리 참석회의,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별 현황,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 유무,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형태, 회의록 공개여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4월 정부 조직도 상의 71개의 기관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을 아래와 같다.

2008년-2016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① 지정현황 목록(기관명 및 회의명), ②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③ 회의록 작성 유무, ④ 회의록 작성 형태, ⑤ 공개 여부 ⑥ 비공개 시 사유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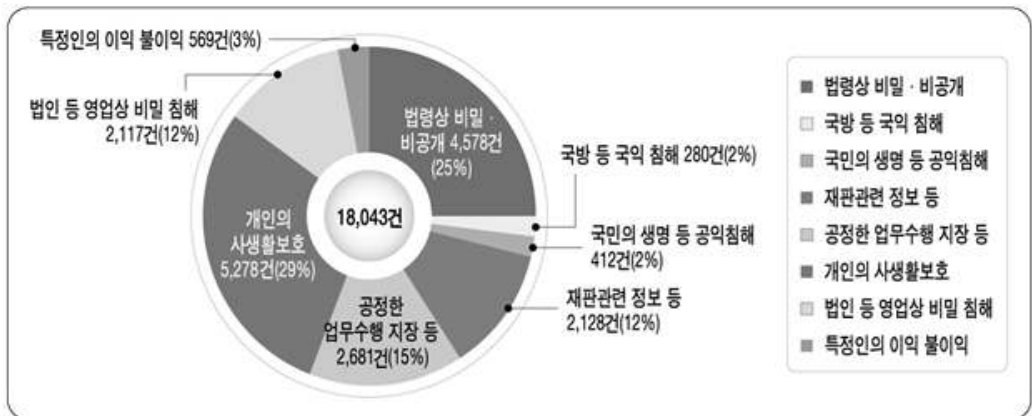
회의공개제도 연구의 필요성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자치부. 20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28.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을 비밀로 하여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한다(변주연, 2008).

§ 552b. Open meeting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a) 이 section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란 section 552(e)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구가 이끄는 기관 그리고 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의 분과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구성원의 다수를 해당 직위에 임명한다.
- (2) ‘회의’란 공식 기관 업무의 공동 수행 또는 처분을 결정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관 구성원 수 이상이 참여한 심의를 의미한다.
- (3) ‘구성원’이란 기관이 이끄는 합의기구에 속하는 개인인을 의미한다.

(b) 구성원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subsection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 기관 회의의 전 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c) 기관이 공익을 위해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 subsection (b) 두 번째 문장은 기관 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경우, subsection (d)과 subsection (e)는 이 section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A) 행정 명령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B)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안
- (2) 오로지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및 관행 관련 정보
- (3) 법률(section 552 이외)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 단, 해당 법률은 (A) 쟁점에 관한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안을 규정하거나, (B) 구체적 보류 기준을 확립하거나 보류되는 사안의 구체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 (4) 개인에게서 얻거나 특권이 성립됐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및 상업적 정보나 재정적 정보
- (5) 특정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 (6)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적 성질의 정보

(7)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 또는 (서면) 수사 기록에 포함됐을 정보. 단, 이러한 기록이나 정보의 제출은 (A) 법 집행 절차를 방해, (B) 공평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 (C)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 (D)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수집하거나 합법적 국가 안보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에 취재원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기밀 정보를 공개, (E) 수사 기법과 절차를 공개, (F) 법 집행 요원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그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해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현황 보고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정보.

(9) 성급한 공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A)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 (i) 통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현저한 금융 투기를 야기하거나 (ii) 특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정보

(B) 기타 기관의 경우,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단, 기관이 제안 조치의 내용이나 성질을 이미 일반에 공개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관이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적용되지 않는다.

(10) 기관의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이나 절차, 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의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한 기관의 참여, 이 title section 554의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 청취 후 기록에 대한 결정 등 기관의 공식 재결에 관한 구체적 사건에서 기관의 시작, 수행이나 처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정보

(d) (1) subsection (c)에 따른 조치는 (subsection (a)(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기관 구성원의 전체 중 다수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만 취한다. 기관 구성원의 표결은 각각의 기관 회의에서 subsection (c)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 또는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하기로 제안된 정보에 대해 이뤄진다. 일련의 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일련의 회의에서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이나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1회 표결할 수 있다. 해당 표결에 참여한 기관 구성원 각각의 표결은 기록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회의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subsection (c) paragraph (5), (6), (7)에 언급된 이유 중 하나를 근거로 기관이 해당 부분을 일반에 비공개

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기관은 구성원 1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기록 표결로써 표결한다.

(3)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이 이뤄지면, 기관은 1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 결과 사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회의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기관은 subsection (d)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 사항과 해당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인원과 그 소속에 관한 목록을 1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4) 회의의 대부분이 subsection (c) paragraph (4), (8), (9)(A), (10) 또는 이러한 사유의 결합을 근거로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나,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시작할 때에 회의의 비공개분을 비공개하기로 기록 표결로써 표결하는 경우, 규칙으로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하는 표결의 사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subsection (d) paragraph (1), (2), (3) 그리고 subsection (e)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회의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은 subsection (c)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 및 회의 일부의 시간, 장소 및 주제를 일반에 공고한다.

(e) (1) 각 회의에서 기관은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일반 공개 여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기관 구성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고한다.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공고하고, 회의를 조기에 소집하는 경우에 기관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그리고 일반 공개 여부를 공고한다.

(2) 회의의 시간이나 장소는 기관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일반에 공고한 경우에만 paragraph (1)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회의의 주제 또는 회의나 회의 일부의 일반 공개 여부에 대한 기관의 결정은 (A) 기관 전체 구성원의 다수가 기관 업무에 필요하고 변경에 대한 조기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고, (B) 기관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러한 변경과 해당 변경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공고한 경우에만 subsection (e)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3) 또한 subsection (e)에 따른 각 공고 직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회의의 공개 여부, 절차의 변경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공지 사항은 발행을 위해 공보에 제출된다.

(f) (1) subsection (c) paragraph (1)에서 (10)에 따라 비공개된 모든 회의에서 기관의 법

무자문위원이나 최고 법률책임자는 자신의 의견으로써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련하여 개별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 기관은 이러한 증명서의 사본을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기재한 회의 감독관의 진술서와 함께 보유한다. 기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각 회의의 절차나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적절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단, subsection (c) paragraph (8), (9)(A), (10)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유지한다. 해당 회의록에는 논의된 모든 사안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취해진 조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덧붙여 각 사안에 제기된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며 호명 투표의 기록(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과 그 사유가 기재된다.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이러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의제의 항목 또는 회의에서 얻은 증인의 증언 항목에 대한 논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paragraph(1)에서 요구되는 경우)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즉시 일반에 공개한다. 단, 기관이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결정한 논의나 증언의 항목은 제외된다.

발언자 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필사 기록, 회의록 또는 전자 기록의 필사 기록 사본은 복사하거나 필사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제공된다.

기관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에 대한 필사 기록의 완전한 사본, 회의록의 완전한 사본 또는 완전한 전자 기록을 해당 회의 이후 최소한 2년 또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가 개최되도록 한 기관의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유지한다.

우리나라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제도

우리 법령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은 없고, 회의록과 관련된 법령 조항이 법17조 시행령 18조 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2016.8.29., 일부개정]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법 비교

Sunshine Actc	vs	공공기록물관리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제17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공개의 원칙 천명		회의록 생산의무 부여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관리, 공개		회의록 작성, 관리
-		지정회의 제도
연방정부 산하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10가지 비공개 예외규정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비공개

출처: 김유승, ‘회의공개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회의록 생산, 관리

미국은 회의제도를 통해서 회의록을 생산, 관리하고 우리나라는 기록물법을 통해서 회의록은 생산, 관리(기록물법을 통해서 회의록을 생산하다보니 회의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이혜진, 정은경, 2012)

회의록 공개

미국의 회의공개법은 국민에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이 필요한 경우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허용한다.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 회의록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의록의 비공개 기준을 정보공개법에 따르고 있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정회의의 운영 분석

지정회의의 현황

지정회의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이 지정하는 회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회의 이후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이 생산되어야 한다.

아래 <표1>은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에 정리된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 현황이며 폐지된 회의, 신규회의를 반영하였다.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회의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로 총 79개 회의가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는 연도별 개최수, 회의록 작성 유무 등이 ‘정보부존재’로 결정되어 본 연구에서 더 이상의 세부 분석은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71개 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1>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 현황

구분	대상회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8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0개)	녹색성장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

구분	대상회의
	업기술보호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23개)	고용정책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국가교통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시도경제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28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군무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함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출처: 국가기록원, 2014년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계획(안) 수정

지정회의 현황을 보면, 대통령기록관 소관을 제외하고 2015년 당시 23개 기관에 71개 위원회가 있다.

<표 2>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14개 지정회의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7개 지정회의, 보건복지부 6개, 농림축산식품부 5개,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4개 순으로 지정된 회의가 많다.

〈표2〉 기관별 회의명

기관	회의명	기관	회의명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보건복지부(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사회보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2)	금융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국민안전처(4)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무역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함정 항공기 등 규격 및 장비 선정 심의위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사혁신처(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여성이족부(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국방부(3)	국방부 정책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군무회의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2)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국토교통부(2)	국가교통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기획재정부(2)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5)		경제관계장관회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시도경제협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행정자치부 (14)	기부심사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기관	회의명	기관	회의명
(2)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별 지정회의의 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지정회의는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2차례에 걸쳐 정해졌다. 2001년에 8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정해졌으며, 2005년에는 4개 회의가 추가로 지정회의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22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대폭 늘어났으며, 2011년 6월 30일 5개 회의가 추가로 정해졌다. 이후, 2013년 8월 20일에는 32개 회의가 지정회의로 정해져 가장 많은 수의 회의가 지정회의가 되었다. 2014년에는 대통령기록관 소관 10개 회의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 개최수를 보면, 먼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회의가 개최 총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제외한 회의 유형 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②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③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따라 지정회의 개최수, 회의록 작성유무, 회의록 형태, 회의록 공개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3>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2001년 지정된 회의가 2건, 2005년 1건, 2009년 4건, 2011년 4건, 2013년 9건이다.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회의 개최수를 보면, 20개 회의 중 5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콘텐츠산업진

흥위원회(2011년 지정), 양성평등위원회(2005년 지정),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2011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01년), 사회보장위원회(2009년)이다. 이 중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011년 지정)가 15회 개최로 가장 많다. 지정회의가 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6개 회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불과하다.

또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중앙민방위협의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도 있다.

〈표 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2009		0	0	0	0	2	0	2	4	0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협의회	2013							■	0	0	★
국민안전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3		◎	◎	◎	◎	◎	■	3	3	0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011		◎	◎	0	0	0	0	1	1	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09		1	1	1	2	0	3	1	9	0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2	1	0	2	10	15	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01	■	■	0	0	■	4	3	4	11	0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위원회	2001	■	■	0	2	■	1	0	2	5	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2009		0	0	0	0	5	4	2	11	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09		1	1	2	2	1	1	1	9	0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013						0	1	3	4	0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013						■	■	0	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11				0	0	■	■	3	3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2005	2	2	1	1	2	2	2	2	2	12	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3						1	3	2	6	0		
통일부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2011				1	1	4	5	1	12	0		
행정자치부	서해5도지원위원회	2013						1	1	2	4	0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2013						1	0	1	2	0		
행정자치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2013						1	1	2	4	0		
행정자치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2013						0	0	0	0	★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표 4〉는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이다.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역시 개최 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001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된 회의는 6건, 2005년 3건, 2009년 5건, 2013년 9건이다. 23개 회의 중 9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2005년 지정)는 지정된 이후 꾸준히 매년 20회 정도 개최하여 총 158회 개최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2005년 지정)는 91회 개최되었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이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2013년 지정)와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2013년 지정)는 해당 기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표 4〉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연도별 개최수와 회의록 작성유무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2005	■	24	19	23	24	23	21	24	158	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2001	0	0	1	2	2	0	■	1	6	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2005	■	■	2	4	■	■	■	3	9	0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2001	0	0	0	0	0	0	0	2	2	0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2005	0	0	0	0	0	25	37	29	91	0		
기획재정부	시도경제협의회	2001	0	1	1	1	1	2	2	1	9	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1	3	2	4	10	0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2013						4	4	1	9	0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2001	■	■	0	1	■	1	1	1	4	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회	2009		0	8	0	0	0	0	0	8	0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 명위원회	2013						0	0	0	0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3						■	■	11	11	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원회	2013						■	■	0	0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2001	■	0	4	5	3	■	■	7	19	0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	2001	■	0	0	0	0	■	■	1	1	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	2013						9	10	11	30	0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2009		0	0	0	0	1	1	1	3	0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2009		0	0	0	0	0	0	2	2	0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2013						3	4	6	13	0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심의회	2013						0	0	1	1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2013						2	2	2	6	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	2013						6	4	7	17	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09		■	9	7	8	10	12	8	54	0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중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회의는 13건, 2011년 1건, 2013년 13건이다. 전체 28개 회의 중 절반이 넘는 14개 회의가 1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회의로 정해진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국무총리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보다 회의 개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는 2009년에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었고 7년 동안 410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정연도는 다르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0 이상 개최한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2009년) 177회, 금융위원회(2009년) 168회, 증권선물위원회(2009년) 133회이다. 지정된 이후 매년 꾸준히 회의를 개최한 회의는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대통령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 7개 회의이다.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는 2013년 지정된 이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표 5〉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현황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2009		■	80	77	72	46	61	74	410	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09		30	25	30	22	25	■	45	177	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9		■	24	40	36	28	30	10	168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2009		■	22	24	29	23	25	10	133	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	21	21	0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2013							■	12	12	0		
국민안전처	합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2013							■	3	3	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2013							■	9	9	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2013							■	3	3	0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2013							■	3	3	0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2013						0	0	9	9	0		
국방부	국방부 정책회의	2009		5	4	5	6	5	8	9	42	0		
국방부	군무회의	2009		2	2	2	2	3	2	1	14	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회	2013						0	9	0	9	0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	2009		1	5	0	1	3	1	4	15	0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2009		0	0	0	0	0	1	1	2	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2009		0	1	2	0	0	1	1	5	0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1				0	0	3	8	12	23	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9		1	8	11	0	0	20	11	51	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09		11	12	12	13	■	■	15	63	0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9		0	10	11	12	12	9	13	67	0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2013						0	0	0	0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13						4	4	6	14	0		
행정자치부	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	2013						0	6	3	9	0		

기관명	대상회의	지정 연도	연도										총수	회의록 작성유무
			08	09	10	11	12	13	14	15				
행정자치부	기록물평가심의회	2013						1	1	1	3	0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2013						4	3	1	8	0		
행정자치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2013						3	3	3	9	0		
행정자치부	행정협약조정위원회	2009		0	0	1	1	0	1	0	3	0		

색표시 : 해당 연도 미지정

■: 부처에서 회의록을 미제출한 경우

★: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

전체적으로 보면, 개최회수가 없어 회의록 작성 유무 확인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는 주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회의인데, 10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5개 회의 중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뿐이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회의는 2013년도에 지정된 6개 회의인데, 5개 회의는 국무총리와 차관급 이상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이중 1개 회의만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회의이다.

지정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회의로 정해질 만큼 중요한 회의일 텐데, 정해진 이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회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비공개 사유

이하에서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그리고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들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를 보면, 서면회의만 개최되었거나(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지원

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회의(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는 회의록 작성형태나 공개 여부를 알 수 없다.

회의 형태를 ‘알수 없음’에는 서면/ 대면의 구분 없이 회의수만 있는 경우이다(녹색성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더 많이 개최된 회의는 20개 회의 중 4개 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이다.

회의록 작성형태를 보면,

-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5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3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1건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 ④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2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3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⑥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1건 (녹색성장위원회),
- ⑦ 서면회의만을 진행하거나 개최건수가 없어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5건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서해5도 지원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별로 회의록 작성형태는 다양하나 요지작성만을 하는 경우가 5건으로 많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공개하는 회의록은 6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1건(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이중 요지작성이 아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참석 회의 전체 20건 중 4건(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원봉

사진홍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뿐이다.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8건의 회의 중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에 조항으로 기재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등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 포함 및 국가안보 영향 등 심의라고 하였다.

〈표 6〉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20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녹색성장위원회			13	○	○	○	비공개	2, 6
중앙민방위협의회	1						비공개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9	7			○		부분 공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8	4			○		공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3	3		○			공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	12		○	○		비공개	5, 6
원자력진흥위원회		4			○		비공개	1, 5, 6
사회보장위원회			14	○			공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	7		○		○	공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			공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0	○			비공개	
양성평등위원회	2	3		○		○	비공개	5, 6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4	3		○		○	비공개	5, 6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14	8				○	비공개	6

대상회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및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서해5도지원위원회	4							
자원봉사진흥위원회	3	1		○	○		공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4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원위원회	0	0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의 회의 형태’를 <표 7>에서 보면, 회의를 서면/대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만 제공한 경우 8건, 자료를 공개 받지 못한 경우가 3건(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다. 서면회의보다 대면 회의가 많은 경우는 5건 (국가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다. 이 중 정보공개위원회는 대면회의만을 진행하였다. 서면회의만 진행한 경우는 2건 (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 ① 요지작성만 하는 경우 1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② 속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8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시도경제협의회),
- ③ 녹음기록만 작성하는 경우 0건,
- ④ 요지작성,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4건(고용정책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
- ⑤ 요지작성, 녹음기록으로 2건 (정보공개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 ⑥ 속기록, 녹음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1건 (국가교통위원회),
- ⑦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0건,
- ⑧ 서면회의만을 진행하여 회의록 형태가 없는 경우 2건 (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 있다.

차관급 회의는 다른 회의유형보다 속기록 작성형태의 회의록 작성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2건 (기부심사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으로 이 회의들은 요지와 속기록, 녹음기록도 공개로 정하였다.

부분공개는 없고, 비공개는 14건이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이 중 제5호(과정 중)와 제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는 자체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1조(영업비밀관련정보 대외공개금지)’ 안건이 개별기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표 7〉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23건)’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고용정책심의회	16	10		○	○		비공개	5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료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료없음					
국가교통위원회	2	28			○	○	비공개	5, 6
경제관계장관회의			282		○		비공개	5
시도경제협의회			14		○			5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9	6			○		비공개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3	7			○		비공개	5,6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	3	1		○			비공개	5,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63		○		비공개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없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		○		비공개	6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경제자유구역위원회			33	○			비공개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							
외국인투자위원회			46	○	○		비공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31	2			○		비공개	2, 6
남북관계발전위원회	1	3			○		비공개	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6	○		○	비공개	5
기부심사위원회	14	3		○	○		공개	5
도서개발심의위원회	2							
정보공개위원회		8		○		○	공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1	23		○	○		비공개	6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는 28건이 분석대상이었으나 이 중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는 2017년에 폐지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공개 받은 자료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회의형태를 보면, 서면인지, 대면인지 구분하지 않고 회의수가 있는 경우가 16건으로 다수여서 서면, 대면의 분석이 거의 무의미하지만 분석하면, 대면만으로도 이루어진 회의가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서면만 이루어진 회의는 1건(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다.

회의록 작성 형태를 보면, 26건의 회의 중 22개 회의가 요지작성을 하고 있어 다른 국무총리, 차관급 회의에 비해 회의록 작성이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지를 작성하고 있는 22건 중 요지작성과 함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10개 회의이며, 요지작성과 녹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5개 회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기록하는 경우는 1건(원자력안전위원

회)이다.

회의록 공개여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회의는 4건(원자력안전위원회,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4건의 회의 중 3건은 요지작성만을 기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요지작성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하는 회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안위 출범('11년10월)이후부터 현재('17년5월)까지 총 69회 개최되었는데, 회의록(속기)은 원안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4건(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함정 항공기동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는 요지작성은 공개하고 의사록은 비공개한다.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들도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함을 알 수 있다.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 가운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회의는 10건이며,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등이 해당하였으며, 역시 제5호와 제6호가 가장 많다. 제7호(경영상, 영업상 비밀)가 다른 국무회의, 차관급 참석회의보다 많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항이 아니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개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2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회의록)제7항 및 「증권선물위원회」제8조(의사록)제7항에 의거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재판·수사, 금융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회의록) 제5항 및 「증권선물위원회」제8조(의사록)제5항에 의거 속기록은 비공개로 하였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증권위)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도 역시 공개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고 하였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 8〉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28건)’ 의 회의 형태, 회의록 작성 형태, 공개여부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 록	녹음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4	12		○			공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43	○		○	비공개	4, 6
합정 항공기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			3	○			부분공개	6
국방부 정책회의			48		○	○	비공개	2, 5
군무회의			15		○	○	비공개	2, 5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88	○		○		2
금융위원회			267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증권선물위원회			211	○	○		비공개(속), 공개(의)	개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20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10	1			○		공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12	4		○			비공개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33	○			비공개	5, 6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594	○	○		알수없음	

대상회의	회의형태			회의록 작성형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서면	대면	알수없음 (회의수)	요지 작성	속기록	녹음 기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4	○			공개	
무역위원회			99	○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			95	○	○		비공개	5, 7
원자력안전위원회			69	○	○	○	공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40	○		○	비공개	5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12	○			비공개	7
순직보상심사위원회			13	○		○	비공개	5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17년 폐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7		○	○		부분공개	5
기록물공개심의회	8	13		○	○		부분공개	5
기록물평가심의회		4		○	○		부분공개	5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15		○	○		비공개	5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11		○	○		비공개	5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	2	8		○	○		비공개	7

결론: 문제점 및 회의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회의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고자 지정회의 대상 회의의 개최, 회의록 생산, 회의록 생산 형태, 공개 유무와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지정회의의 지정 문제

지정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국가기록원)이 지정하는 회의이지만,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서면회의만 있는 회의 국무총리급 회의 5건, 차관급 회의에서 서면회의만 있는 회의는 2건이다.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하도록 지정회의로 정하여졌을 때에는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정되었을 것이 상식적인데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서면회의만 있었다는 것은 과연 지정회의로 정하여 질 만한 회의였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면회의일 경우, 회의록 관리 문제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도 없고, 그러므로 회의형태도 알 수 없다.

서면일 경우에도 결정된 바가 있을 것임에도 내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결정은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요지작성 선호

공개, 부분공개 포함하여 7건, 이중 요지작성이 아닌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공개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참석 회의 전체 20건 중 4건이다.

개별법, 특별법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는 10건이며 이

중 6건은 요지작성만을 기록하여 공개한다.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들도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함을 알 수 있다.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는 보통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이 사유가 되었고, 세 가지 회의 유형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제6호가 가장 많은 비공개 사유가 되었다.

내부의사결정에 발생하는 정보를 알고, 국정운영에 책임성을 높이고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다시 제5호가 많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비공개 되어야 할 회의, 회의록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비공개 되는 절차나 사유에 대한 보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공개 회의, 회의록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의록 생산과 관리가 아닌 회의 공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 정보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민주행정, 투명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모든 회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대상의 확대되어야 하고, 지정회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되어야 한다.

- 모든 회의록은 충실히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다수의 회의록의 요지작성의 형태로 끝나는데, 과연 요지작성만으로 회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지작성에 회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서식의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I. 들어가는 글

1. 미국에서 회의공개법 제정

미국은 연방보다 주에서 회의공개법은 먼저 제정하였다. 앨라배마가 1915년 최초로 ‘회의공개법’을 입법화했으며 1950년 후반까지 포괄적인 회의공개법을 가진 유일한 주였으나 그 법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알권리 개념이 확산되면서 다른 주들도 입법화하기 시작하여 1976년까지 46개 주에서 회의공개법이 존재했으나 미국에서 회의공개법은 20세기 중반까지는 존재감이 미약했다. 그러나 1972년 워터게이터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면서 각 주들은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회의공개법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976년 뉴욕을 마지막으로 50개 모든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가 회의공개법을 제정했고 마침내 연방회의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손태규, 2015).

2. 미국 50개주 회의공개법 명칭과 내용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Open Meeting Act 또는 Open Meeting Law이나 몇몇 주들은 <표 1>과 같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1> 미국 주별 회의공개법 명칭의 예

주 명	회의공개법 명칭
대다수의 주	Open Meeting Act 또는 Open Meeting Law
콜로라도, 미주리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Sunshine Law
인디애나	Open Door Law
오레곤, 와이오밍	Public Meetings Law
유타	Open and Public Meetings Act
웨스트 버지니아	Open Governmental Proceedings Act

이하에서는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별 공개회의의 범위를 전자회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회의공개법의 일반 개요, 셋째, 회의공개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마지막으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보고자 한다.

II. 미국 50개주별 공개회의 범위 연구: 전자회의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확대는 정부 영역에서 기존의 대면회의에서 전화회의, 이메일 등 전자 통신을 활용한 회의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회의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특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회의공개법 시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회의가 회의공개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비밀주의, 비공개주의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에서 나타난 공개회의의 범위, 특히 전자회의의 범위 및 운영 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공개회의 범위

미국 주별 회의공개법의 규정 중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에 관해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대면회의 이외에 전화회의, 전자통신 수단(이메일, 화상회의)을 공개회의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있다. 미국의 회의공개법에서 공개회의의 정의와 범위는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회의를 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회의공개법에서는 전자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회의를 공개회의에 포함한다고 단순히 언급한 경우도 있고, 이메일만 언급한 경우,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 등 50개 주마다 다양하다.

2. 공개회의 범주에 전자회의 포함 여부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에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등이 모두 언급 된 것은 아니다. 언급되지 않은 26개 주¹⁾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주에서 전화회의와 전자 매체를 활용한 회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회의공개법에 전자통신을 언급한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화회의, 화상회의, 이메일 회의 순이다.

1) 알래스카,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오키호,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등 26개 주이다.

3. 전자회의 표기 방식

주마다 이메일을 제외한 전자통신, 전화회의, 화상회의 등의 표기방식이 다르다.

전자통신의 경우 electronic communications, electronic meetings,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onic methods, electronic means 등으로 표기하였다.

전화회의에 대해서도 telephone conversations, telephonic communication, telephone conferencing, (teleconferencing) 등으로 표기하였다.

화상회의는 video teleconferences, videoconferencing, videoconference call, video or audio conference으로 표기가 조심씩 차이가 있다. teleconferencing, teleconference의 경우, 주마다 전화회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또는 전화회의와 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경우로 다르게 언급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eleconferencing, teleconference에 visual의 의미가 나타날 경우에만 전화회의, 화상회의로, 나머지 경우에는 전화회의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주마다 표기방식이 다르지만 편의상 전자통신, 전화회의, 화상회의로 통칭하여 기술하고자 한다(〈표 2〉 참조).

4. 전자회의 범위

회의공개법에 전자회의에 대한 범주 관련하여 ‘내용없음’을 제외하고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의 언급 여부에 따라 〈표 3〉과 같이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 2〉 공개회의 범위

주명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기타
앨라바마	회피용 ×				이메일 투표 ×
알래스카	내용없음				
애리조나		○	○		
아칸소	내용없음				
캘리포니아		회피용 ×		○	
콜로라도	○	○	○		
코네티컷	내용없음				
델라웨어	내용없음				이메일판례
플로리다	내용없음				
조지아	내용없음				
하와이					이사회회의에회피용 ×
아이다호	내용없음				
일리노이	○		○	○	
인디애나	내용없음				
아이오와	○				
캔자스	내용없음				
켄터키				○	
루이지애나	내용없음				
메인	내용없음				
메릴랜드	내용없음				
메사추세츠	○	○			
미시간	내용없음				
미네소타	내용없음				
미시시피	○		○		
미조리	내용없음				
몬태나	○				
네브래스카	○	회피용 ×	○(특정)	○(특정)	공중의 오디오, 비디오 촬영 가능
네바다			○	○	
뉴햄프셔	내용없음				
뉴저지	내용없음				
뉴멕시코	내용없음				
뉴욕				○	

주명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기타
네바다			○	○	
뉴햄프셔	내용없음				
뉴저지	내용없음				
뉴멕시코	내용없음				
뉴욕				○	
노스캐롤라이나	○		○		
노스다코타	○		○	○	
오하이오					
오�크라오마				○	
오리건	○		○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		○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		○	○	
테네시			△	○	
텍사스					
유타	0				
버몬트	내용없음				
버지니아	○		○	○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	회피용 x	○	○	
위스콘신					
와이오밍	○		○		

〈표 3〉 회의 정의에서 전자회의 범위 관련 언급

구분	주	개수
1. 전자통신	아이오와, 몬태나, 유타	3
2. 전자통신, 이메일	앨라바마, 매사추세츠	2
3. 전자통신, 전화회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5
4.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콜로라도	1
5.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2
6. 전자통신, 전화회의, 화상회의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4
7. 이메일, 전화회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2
8. 전화회의, 화상회의	켄터키, 테네시, 오크라오마, 네바다	4
9. 화상회의	뉴욕	1
내용없음(언급없음)	※ 델라웨어(이메일 판례), 하와이(이사회 규정에서 언급)	25
전자통신, 화상회의	유형 없음	
전자통신, 이메일, 화상회의		
이메일		
이메일, 화상전화		
전화회의		

5. 회의공개법 내 회의 정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언급 없음’의 경우 공개회의 정의의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전자통신 수단 관련 ‘언급 없음’의 경우 공개회의 정의의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률은 공공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공공 기관 구성원의 정족수를 소집한 회의라고 규정한다
뉴햄프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공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 구성원으로 구성된 모든 정족수의 모임을 규정한다. • 이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면제는 단체 교섭 전략 및 협상, 변호사-고객 특권에 해당하는 협의, 단일 정당 간부회, 공개회의에서 결정을 단순히 마무리 하는 초안 문서의 회람 등이다.
뉴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회의는 공공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공공 사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할 목적으로의 모임을 의미한다. • 이 정의에 대한 주목할만한 면제는 공공 기관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하기 참석하는 모든 회의, 3개 이상의 유사한 공공 기관의 회원에게 공개 된 협약 등이다.

6. ‘전자통신 회의’를 포함한 경우 회의 정의

- 미시시피의 경우, 법은 ‘회의’를 공공 정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공식 회의로 정의한다. 정의에는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회의가 포함된다.
-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화상회의, 전화회의과 같은 전자 수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나, 전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회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 법이 적용되는 ‘회의’는 결정이나 심의를 하기 위해 공공 기관 또는 소위원회의 정족수를 소집하는 것이다. 공공 기관이 어떤 공식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심사에 관해 논의 할 때, 이것은 회의이다. 회의는 전화회의, 화상 회의와 같은 기타 전자 수단으로 개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 기관은 회의 참여자, 참석한 시민들 서로 간에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각 주별 회의공개법 내 전자회의 관련 규정

각 주별 회의공개법 내 명시되어 있는 전자회의 관련 규정은 <표 5>와 같다.

<표 5> 각 주별 회의공개법 내 전자회의 관련 규정

연번	주명	전자회의 관련 규정
1	앨라배마	앨라배마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은 회의공개법 조항의 하점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이메일 투표(email voting)”의 일반적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Alabama Code 36:25A:1).
2	알래스카	내용없음
3	애리조나	공개되는 회의에는 이메일 및 전화 대화(telephone conversations)가 포함된다(Arizona Statute 38:431).
4	아칸소	내용없음
5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회의공개법(브라운 법: the Brown Act)은 공개된 회의를 심의하는데 원격회의(teleconferencing)를 포함한다. 또한 공공 기관이 이메일과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회의 공개법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공개되는 회의의 정의에 직접, 전화 또는 전자통신(person, telephon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이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은 보류 중인 건을 논의하는 이메일의 내용 역시 회의를 구성하고 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한다.
7	코네티컷	내용없음
8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전자통신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2009년 7월 이메일 관련 판례만 있다. 공개회의를 회의 밖에서 논의했음을 입증하는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관한 소송에 대해, 회의공개법 위반이지만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공공 기록에 대해 USD227.12의 금액을 부과했다.
9	플로리다	내용없음
10	조지아	내용없음
11	하와이	하와이는 공개회의의 일반 정의에서 전자통신 회의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전자통신이 결정과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92-5 Exceptions(a)).
12	아이다호	내용없음
13	일리노이	일리노이 법률에 따르면, 의회가 비공개 회의로 결정한 회의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직접 또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컨퍼런스, 전화 통화, 모든 종류의 전자 수단으로 진행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연 번	주명	전자회의 관련 규정
14	인디애나	내용없음
15	아이오와	이 법안은 미팅이 여전히 공개 미팅 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리적 미팅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전자 미팅 사용을 허용한다(Iowa Code 21-8).
16	캔자스	내용없음
17	켄터키	법률에 따르면 켄터키 공개 회의 법률의 목적 상 회의는 화상 회의 및 임시 모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공립 교육 기관의 모든 모임을 의미한다(Kentucky Revised Statutes 61.805). 또한 이 법안은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이 화상/전화 회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Kentucky Revised Statutes 61.810).
18	루이지애나	내용없음
19	메인	내용없음
20	메릴랜드	내용없음
21	메사추세츠	심의회는 전자 메일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22	미시간	내용없음
23	미네소타	내용없음
24	미시시피	회의공개법은 공공 정책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공공 기관의 공식 회의로 정의한다. 정의에는 전자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회의가 포함된다(전화회의, 화상회의의 요건이 따로 지정되어 있음). 이 법안은 모든 공공 기관이 전화회의를 사용하여 모든 회의에 대해 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은 물론 회의 장소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 비상 사태의 경우,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전화회의를 사용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	미조리	내용없음
26	몬테나	몬테나 주에서 회의는 공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전자 장비의 사용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 구성원의 정족수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27	네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브래스카는 공개회의에서 통신 장비를 사용에 대해 다른 주에 비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메일이 회의공개법의 의도를 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 대중은 공개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정부 기관, 이사회,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특정 공공 기관의 회의는 전화회의 및 화상 회의(teleconferencing and videoconferencing)가 허용된다. • 화상회의도 대중이 회의참석, 청취 및 발언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합리적인 선행 공고가 주어져야 하고 회의 참석, 청취 및 발언에 대한 대중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화상회의에서 검토 중인 모든 문서의 사본 한 벌 이상을 화상 회의의 각 장소에서 대중에게 제공한다. 공공 단체의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화상 회의의 각 장소에 참석한다. • 전화회의에 대해서도 화상회의와 유사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전공지와 대중이 회의 참석, 청취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	주명	전자회의 관련 규정
28	네바다	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회의에서 전화회의 또는 화상 회의(teleconference or videoconference)를 통해 출석 한 경우 공공 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회의에 출석 한 일반 대중의 구성원 회의를 듣거나 관찰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NRS 241.010).
29	뉴햄프셔	내용없음
30	뉴저지	내용없음
31	뉴멕시코	내용없음
32	뉴욕	<p>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의 사용을 포함한 공공 사업을 수행할 목적의 공공 기관의 공식적 모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회의라 함은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공공 장소의 과반수의 전화 회의 또는 기타 전자 수단(telephone or other electronic means)에 의한 회의를 의미한다(§ 143-318.10.(d)). 전자회의 청취에 드는 수수료 부과시킬 수 있음 (a) 전자 회의.- 회의용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중의 구성원이 회의를 청취 할 수 있는 위치와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본조에서 요구하는 회의 통지는 그 위치를 명시한다. 필요한 청취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각 청취자에게 최대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143-318.13(a)). 회의 방해 처벌조항 있음 노스캐롤라이나는 특이하게 회의를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혼란 시키거나 방해하는 사람, 의장이 회의를 떠날 것을 지시 할 때, 고의적으로 회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제 2 급 경범죄의 유죄이다(§ 143-318.17. Disruptions of official meetings).
34	노스다코타	법률은 공공 사업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대면 혹은 전화, 비디오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공 단체 구성원의 정족수 모임을 회의라고 규정한다.
35	오하이오	내용없음
36	오크라호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econference는 비디오와 오디오(visual and auditory)를 허용하는 상호작용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원거리에 있는 공공 기관의 구성원들간의 회의를 의미한다. 개인도 녹화, 녹음 가능 : 공공 단체는 개인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장비를 사용하여 공개 회의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

연번	주명	전자회의 관련 규정
37	오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건 주는 공개회의에 전화회의와 전자통신에 의한 회의를 포함하는 규정, 전자회의를 위한 시설 규정 외 장애인의 공개회의 참여에 관한 규정과 흡연에 관한 규정도 포함한다. • 전자회의의 시설 관련 조항 :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의사 전달 수단이 사용되고 회의는 대중이 그 당시에 청취 할 수 있는 장소를 적어도 한 곳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개회의법에 장애인 규정 있음 : 공공 기관의 처리회가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정기 회의서 청각 장애자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통역관을 갖도록 선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ORS 192.630). • 통역인을 요청한 사람은 집행 기관에 적어도 48시간 전에 통역사 요청을 통보하고 요청자의 이름, 수화 환경 설정 및 집행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공개회의에서 흡연 금지 조항 : 공개회의가 열리는 방에서 담배를 휴대하거나 피지 말아야 한다(ORS 192.710).
38	펜실베이니아	<p>내용없음: 대중참여 조항이 있음. 이사회나 협의회는 회의 초반에 모든 대중의 의견을 수락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65 Pa.CSA § 710.1. 대중 참여).</p>
39	로드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적용대상 : 이 법안은 정부 기관을 공공 기금으로 적어도 예산의 25%를 받은 모든 도서관을 포함하여 주 및 시 정부의 모든 기관, 부서, 위원회 및 이사회로 정의한다. • 전화 대화, 전화회의를 포함한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회의는 이 법의 의도를 우회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로드아일랜드 역시 회의 장소 접근에 관한 장애인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42-46-13.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40	사우스 캐롤라이나	<p>내용없음</p>
41	사우스 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따르면 teleconferencing를 포함한 모든 공식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주,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단체가 teleconference를 통해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정부,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기관은 대중이 화상 회의를 경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에 참여하는 공공 단체 멤버의 정족수가 적은 teleconference가 개최되는 공식 회의의 경우 대중에게 개방 된 위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회의를 청취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사우스다코타는 teleconference의 정의를 따로 장을 두어 정의하고 있으며 전화, 화상회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25-1.2. Teleconference 정의. 이 장의 목적에 따라, teleconference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오디오, 비디오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해 교환되는 정보이다.
42	테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회의, 화상전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며 파트별로 따로 정리하고 있다. • 화상회의 통화는 하나 이상의 참가자가 전화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통해 다른 참가자와 통신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간에 수행되는 통신을 의미한다.
43	텍사스	<p>내용없음</p>

주요 주요	주명	전자회의 관련 규정
44	유타	법률은 회의는 공공 정책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직접 또는 전자 방법을 통해 공공 기관 구성원의 정족수를 모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5	버몬트	그룹 이메일은 회의를 정하고 의제를 만들고 회의를 논의하는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된다 (1 V.S.A. § 3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회의를 하도록 명시된 회의에서 전화, 비디오, 전자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논의되거나 처리되는 회의실사가 가능하며 이 세션(규정)의 어떤 내용도 대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화식 오디오 또는 비디오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전자통신 수단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특별 관리 : § 2.2-3708. F. 전자통신 수단으로 만난 공공 기관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버지니아 자유 정보 자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46	버지니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해에 개최 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회의의 총 수; 2. 회의의 날짜와 목적; 3. 회의 의제 사본 4. 각 회의의 사이트 수 5. 회의가 개최 된 전자통신 수단의 유형 6. 각 회의 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포함한 참가자 수 7. 결석으로 기록 된 공공 단체 회원 및 각 회의 장소에서 참여 기록된 회원의 신원 8. 전자 의사 전달 회의에 관한 모든 의견의 요약 9. 로지스틱 및 기술 경험을 포함한 전자통신 회의를 사용하여 공공 기관의 경험에 대한 서면 요약
47	워싱턴	내용없음
48	웨스트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회의, 전화회의와 같은 전자 수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나, 전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회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 법이 적용되는 회의는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나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소위원회 의 정족수를 소집하는 것이다. 회의는 화상 회의와 같은 전화 회의 또는 기타 전자 수단으로 개최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간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중 매체 또는 회원들이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러나 논의가 직접,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전기 통신 수단을 통한 공공회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 회의다
49	위스콘신	내용없음
50	와이오밍	총회Assembly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 수단telephone or electronic communication을 통해 직접 또는 모든 참여 회원들이 서로 즉시 통신 할 수 는 방식으로 직접 통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전자회의의 관련 규정

대중의 접근 가능성과 전자회의의 시설에 대한 규정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중은 공개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네브래스카)
- 회의공개법 규정에 화상/전화회의를 진행할 시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이 회의를 진행해야 함을 언급한 주도 있다(켄터키)
- 화상회의도 대중이 회의참석, 청취 및 발언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합리적인 선행 공고가 주어져야 하고 회의 참석, 청취 및 발언에 대한 대중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화상회의에서 검토 중인 모든 문서의 사본 한 벌 이상을 화상 회의의 각 장소에서 대중에게 제공한다. 공공 단체의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화상 회의의 각 장소에 참석한다(네브래스카).
- 전화회의에 대해서도 화상회의와 유사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전공지와 대중이 회의 참석, 청취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의사 전달 수단이 사용되고 회의는 대중이 그 당시에 청취 할 수 있는 장소를 적어도 한 곳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리건).
- 전자 매체를 통해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대중이 화상 회의를 경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제공해야 대중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회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사우스다코타).

9. 청취자 수수료(청취에 드는 비용) 부과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회의용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중의 구성원이 회의를 청취 할 수 있는 위치와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본조에서 요구하는 회의 통지는 그 위치를 명시한다. 필요한 청취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각 청취자에게 최대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0. 전자통신 수단으로 만나는 건에 대해 특별 관리 및 보고

전자통신 수단으로 만난 공공 기관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버지니아 자유 정보 자문위원회에 전자회의의 개최수, 의제 사본, 사용된 전자통신 수단 유형, 일반 대중을 포함한 참가자 수와

같은 내용을 서면보고 해야 한다(버지니아).

이상의 50개 주의 회의공개법 내 전자회의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주별 공개회의 범위 관련한 전자회의 포함 내용

주명	내용
앨라배마	전자 통신은 회의공개법 조항의 하점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이메일 투표의 일반적 사용을 배제
알래스카	내용없음
애리조나	공개되는 회의에는 이메일 및 전화 대화가 포함
아칸소	내용없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회의공개법(브라운 법: the Brown Act)은 공개된 회의를 심의하는데 전화회의를 포함. 또한 공공 기관이 이메일과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회의공개법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공개되는 회의의 정의에 직접, 전화 또는 전자 통신이 포함. 구체적으로 법률은 보류 중인 건을 논의하는 이메일의 내용 역시 회의를 구성하고 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
코네티컷	내용없음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전자 통신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2009년 7월 이메일 관련 판례만 있음
플로리다	내용없음
조지아	내용없음
하와이	하와이는 공개 회의 일반 정의에서 전자 통신 회의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전자 통신이 결정과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아이다호	내용없음
일리노이	일리노이 법률에 따르면, 의회가 비공개 회의로 결정한 회의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직접 또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컨퍼런스, 전화 통화, 모든 종류의 전자 수단으로 진행되더라도 공개해야 함
인디애나	내용없음
아이오와	이 법안은 회의가 공개회의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리적 미팅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전자 미팅 사용을 허용

주명	내용
캔자스	내용없음
켄터키	법률에 따르면 켄터키 공개회의 법률의 목적 상 '회의'는 화상 회의 및 임시 모임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공립 교육 기관의 모든 모임을 의미함
루이지애나	내용없음
메인	내용없음
메릴랜드	내용없음
메사추세츠	전자 메일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심의'
미시간	내용없음
미네소타	내용없음
미시시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회의가 포함됨. 비상 사태의 경우,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전화회의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미조리	내용없음
몬태나	'회의'는 공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전자 장비의 사용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 구성원의 정족수 모임으로 정의
네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이 회의공개법의 의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 대중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특정 공공 기관의 회의는 전화회의 및 화상 회의를 통해 허용됨
네바다	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회의에서 전화회의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출석 한 경우 공공 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회의에 출석 한 일반 대중의 구성원 회의를 듣거나 관찰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뉴햄프셔	내용없음
뉴저지	내용없음
뉴멕시코	내용없음
뉴욕	화상회의 포함
노스캐롤라이나	'공식 회의'라 함은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목적으로 공공 장소의 과반수의 회의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에 의한 언제나 장소에서의 회의, 집회 또는 집회를 동시에 의미함
노스다코타	회의는 대면 또는 전화, 화상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 회의를 의미함
오하이오	내용없음
오クラ오마	전화 또는 화상 회의 내용 포함

주명	내용
오리건	전화 또는 전자 통신에 의한 규정 있음
펜실베이니아	내용없음
로드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회의가 이 법이 의도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전화 통신 및 전화 회의를 포함한 전자 통신을 통한 공공 단체의 논의는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함
사우스캐롤라이나	내용없음
사우스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에 따르면 전화 회의를 포함한 모든 공식 회의는 공개되어야한다고 명시 주,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단체가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해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정부,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기관은 대중이 화상 회의를 경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제공
테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회의, 전화회의 규정 있음 화상 회의 통화는 하나 이상의 참가자가 전화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이중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통해 다른 참가자와 통신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 간에 수행되는 통신을 의미
텍사스	내용없음
유타	전자회의 포함
버몬트	전화, 비디오, 전자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논의
버지니아	전화, 비디오, 전자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논의되거나 처리되는 회의
워싱턴	내용없음
웨스트버지니아	화상회의, 전화회의와 같은 전자 수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나, 전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회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명시
위스콘신	내용없음
와이오밍	총회는 전화 또는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모든 참여 회원들이 서로 즉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통신하는 것을 의미

11. 시사점

전자회의의 관련하여, 미국은 50개 주 회의공개법 가운데 24개 주의 경우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를 공개회의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자회의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은 듯 하다. 정보공개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심의회 의원 간의 일정조정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심의(회의)가 이루어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면심의회는 위원들 간의 의견교류도 없었고 심의 결과에 대한 공지도 없이 끝났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회의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메일을 활용한 회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사례가 없을 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이후 더 활발히 전화회의, 화상회의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통신을 활용한 회의 역시 그 결과의 활용은 대면회의(직접회의)와 같은 효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에 대한 정의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 미국 24개 주의 경우 전자통신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의 포함 여부의 차이가 있는 등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회의에 관해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포함한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회의의 관련하여 회의 범위에 대한 규정 외 대중의 참석, 청취 및 발언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시된 주도 있다. 전자회의에 대한 합리적인 선행공고가 주어질야 하고 전화회의와 화상회의시 청취가 가능한 장소를 제공, 검토 중인 문서의 사본 제공, 공공 기관의 구성원 중 적어도 1명은 회의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개인이 회의 내용을 녹화, 녹음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오리건과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공개회의에 대한 장애인 접근 및 통역사에 대한 규정이 있기도 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는 청취자에게 청취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게 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전자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회의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전자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회의의 경우 매년 정보위원회에 전자회의 개최수, 의제, 사용된 전자통신 수단 유형, 일반대중 포함한 참가자 수 등을 서면보고 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자회의에 대한 개념 및 범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대해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전자회의의 경우 대면회의보다 물리적으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회의공개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 상황에서 적어도 버지니아의 경우처럼 전자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위원회에 매년 서면보고하도록 하는 소극적 조치라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III. 회의공개법 일반 개요 및 운영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공개회의의 정의는 살펴보았고, 공개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과 회의공개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회의공개의 목적, 적용 받는 정부 기관, 회의 프로세스와 비공개 회의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자 한다.

1. 회의공개법의 목적

회의공개법의 목적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기관의 활동 및 프로세스가 공개적으로 수행되므로 대중의 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주 의회는 주에 있는 공공위원회, 이사회, 협의회 및 기타 공공 기관이 국민의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의 의도는 공개적으로 그들(기관)의 행동이 취해지고, 그들의 심의가 공개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국민은 자신을 섬기는 대행 기관(the agencies which serve them)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위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사람들이 알기 좋은 것, 알기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

(하와이)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의 프로세스를 대중의 감시와 참여로 개방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의회는 공공 정책의 형성과 실행(토론, 심의, 결정 및 정부 기관의 활동)과 같은 주 정책이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정책을 집행을 위해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의도이다.

공개 회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 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은 비공개 회의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회의공개법의 적용 대상 기관

회의공개법의 적용 대상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에는 주마다 내용이 다양하다. 대체로 입법부를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하나 적용 여부가 모호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면제 대상 기관을 나열하고 있다. 아래 몇몇 주의 예를 들고자 한다.

- 애리조나의 경우, 정부 기관을 주정부의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모든 하위부서와 지자체로 정의한다. 입법부 뿐만 아니라 주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모든 민간 기업 및 기구의 이사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애리조나 회의공개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주목할 만한 대상은 ①사법 절차 ②입법 간부회 ③입법부 회의위원회 ④사법위원회 ⑤지문 채취위원회 등이다.
- 유타의 경우, 공공 기관을 ‘모든 행정, 자문, 집행 기관 또는 주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의 입법 기관’으로 정의한다.
-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정부 기관을 주 또는 정치 하부 기관 및 공적 자금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하거나 공공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이 법안에는 주지사의 내각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공 서비스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항만 당국 및 의료 시설위원회를 포함한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입법부는 공공 기관의 정의에 해당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회의공개법의 적용을 받는다.
- 오클라호마의 경우, 정부 기관을 공공 자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하고 공공 재산 및 모든 공공 단체의 소위원회를 유지하는 주, 카운티 및 기타 모든 정치 하부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는 주 의회(입법부)는 공개회의 대상에 불포함 하고 있다.

3. 회의 프로세스

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주별 일반적 내용은 첫째, 모든 공공 기관이 회의 시간 및 날짜, 출석 회원, 논의 된 주제 및 행해진 투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회의록에 대중이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둘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회의 녹음과 방송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 알래스카의 경우, 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수행하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알래스카 법률은 대중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공공 회의 개최에 있어 전화 회의를 허용한다. 또한 법은 가능한 경우 논의 될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부 기관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회의 녹음 및 방송을 허용한다. 일반 대중이 공개 회의를 녹음한 것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30일 후에는 녹음을 파기 할 수 있다.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 기관은 공개기록법에 의거하여 문서의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한 회의 전 또는 회의 중에 이사회 구성원에 배포된 문서를 대중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모든 공공 기관이 회의 시간 및 날짜, 출석 회원, 논의 된 주제 및 행해진 투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회의록은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은 또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공개 회의의 어떤 부분을 기록 할 권리가 있다.
- 뉴욕의 법안 경우, 공공 기관이 회의 시간과 날짜, 출석 회원, 토론 된 주제 및 행해진 투표 수를 포함한 모든 회의록을 가지고 있기를 요구한다. 회의록은 대중이 접근가능해야 한다.

4. 비공개 회의

공개회의에 예외가 있으며 일반적인 공개회의 면제 이유에는 개인 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협상, 라이선싱 시험/ 결정, 타법률에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공공 기관은 이와 같은 이유로 과반수 투표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마다 비공개 회의가 되는 이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는 <표 7>과 같다.

<표 7> 주별 비공개 회의 이유

주명	개인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 협상	라이선싱 시험/ 결정	타법률 면제
앨라바마	0	0	0	0	0		
알래스카	0						0
애리조나	0	0		0	0		0
아칸소	0		0			0	
캘리포니아	0	0		0	0	0	
콜로라도		0	0	0	0		0
코네티컷	0	0	0	0			0

주명	개인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 협상	라이센싱 시험/ 결정	타법률 면제
델라웨어	0	0	0	0			0
플로리다			0				
조지아	0	0		0			0
하와이	0	0	0		0		0
아이다호	0				0		0
일리노이	0	0		0		0	
인디애나	0	0	0	0	0	0	0
아이오와	0	0	0	0		0	0
캔자스	0	0	0	0	0		
켄터키	0			0	0		0
루이지애나	0		0		0		
메인	0	0		0	0	0	0
메릴랜드	0	0	0	0	0	0	
메사추세츠	0		0	0	0		
미시간	0	0		0	0		0
미네소타	0	0	0	0	0		
미시시피	0	0	0	0		0	0
미조리	0	0	0	0	0		0
몬태나	0	0					
네브래스카	0		0		0		
네바다	0					0	
뉴햄프셔	0	0	0	0			
뉴저지	0	0	0	0	0	0	0
뉴멕시코	0	0		0	0	0	
뉴욕	0	0	0	0	0	0	
노스캐롤라이나	0	0	0		0		0
노스다코타		0					0
오하이오	0	0	0	0	0		0

주명	개인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 협상	라이선싱 시험/ 결정	타법을 면제
오クラ호마	0	0		0	0		0
오리건	0	0	0	0	0	0	0
펜실베니아	0	0		0	0		0
로드아일랜드	0		0	0	0		
사우스캐롤라이나	0		0	0			
사우스다코타	0	0					
테네시		0					0
텍사스	0	0	0	0		0	
유타	0	0	0	0	0		
버몬트	0		0	0	0		0
버지니아	0	0	0	0		0	0
워싱턴	0	0	0	0			
웨스트버지니아	0	0		0		0	0
위스콘신	0	0		0		0	
와이오밍	0	0	0	0	0	0	0

5 회의 방해 처벌조항

노스캐롤라이나는 특히하게 회의를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사람, 의장이 회의를 떠날 것을 지시 할 때, 고의적으로 회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제2급 경범죄의 유죄이다

6. 개인 녹화, 녹음 가능

오克拉호마, 네브래스카의 경우, 공공 단체는 개인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장비를 사용하여 공개 회의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공개회의법에 장애인 관련 규정

공공 기관의 치리회가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정기 회의서 청각 장애자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통역관을 갖도록 선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ORS 192.630). 통역인을 요청한 사람은 집행 기관에 적어도 48시간 전에 통역사 요청을 통보하고 요청자의 이름, 수화 환경 설정 및 집행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오리건). 장애인의 회의 장소 접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로드아일랜드)

8. 공개회의에서 흡연 금지 조항

공개회의가 열리는 방에서 담배를 휴대하거나 피지 말아야 한다(오리건, ORS 192.710).

IV. 주별 회의공개법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1.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의 사전 공지로부터 시작된다.

50개 주 모두 각각의 회의공개법을 통해 회의 개최의 사전 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단, 6개 주(Florida, Kansas, Maine, Maryland, Montana, Tennessee)는 사전 공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44개 주를 대상으로 회의 개최 사전공지 절차와 요건을 분석한다.

2. 사전 공지 기간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사전 공지 기간은 정기회의, 비정기회의, 비상회의 등 회의 개최의 정기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① 연단위 회의 일정의 공표

분석대상 44개 주 중, Connecticut, Illinois, Louisiana, Michigan, Oklahom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등 7개 주는 매년 연 단위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 Connecticut 주의 모든 정부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모든 정기회의의 일정을 공표해야 함
- Illinois 주의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 초에 정기회의의 일정, 날짜, 시간, 장소를 게시하여야 함
- Louisiana 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 정기회의 일정을 공표해야 함
- Michigan 주는 연간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해에 첫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그 해의 정기회의 일정을 공표함
- Oklahoma 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정기회의 일정을 마련하여야 함
- Rhode Island 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 정기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South Carolina 주 역시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초에 정기회의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② 정기회의

정기회의 사전 공지 기간은 24시간부터 10일까지 다양함. 단, 공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주가 13곳이다.

〈표 8〉 정기회의 사전 공지 기간

사전공지 기간	주(개)	주 명
명시없음	13	Alaska, Arkansas, Mississippi, Nebrask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Vermont, Washington, Wyoming
24시간	15	Arizona, Colorado, Connecticut, Georgia, Iowa, Kentucky, Louisiana, Minnesota, Missouri, New Hampshire, New Mexico, South Carolina, South Dakota, Utah, Wisconsin
48시간	4	Indiana, Massachusetts, New Jersey, Rhode Island
72시간(3일)	4	Nevada, New York, Texas, Virginia
5일	2	Idaho, West Virginia
6일	1	Hawaii
7일	2	Alabama, Delaware
10일	2	Illinois, Michigan
3일/10일*	1	California
합계	44	

* California 주의 회의공개와 관련된 복수의 법률 중, 브라운(Brown)법과 베이글리-킨(Bagley-Keene)법은 각각 3일과 10일 간의 사전공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③ 비정기(특별)회의

50개 주정부별 비정기회의의 사전 공지 기간은 24시간 13곳, 48시간 1곳, 1시간 곳 등이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주들은 비정기회의의 고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회의에 준하는 공지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비상회의

비상회의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사전 공지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단, 회의록을 통해 비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비상회의 개최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상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주가 많다.

비상회의의 개최 이유들 중 가장 공통적인 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사항이다.

비상회의의 개최는 가능한 신속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비상회의의 참석 위원에게 비상회의의 개최가 공지되는 같은 시각에 회의 개최 공지를 요청한 언론기관과 개인에게 회의 개최가 통지되도록 하고 있다.

3. 사전 공지의 핵심은 회의 의제의 공지다.

일반적으로 회의 사전 공지는 회의 개최 시각, 날짜, 장소와 함께 회의 의제를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공표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표된 회의 의제의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회의를 통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이슈가 임의로 논의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기회가 박탈되고, 회의공개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제의 변경 또는 추가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 2/3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의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4. 사전 공지의 대상은 폭넓다.

사전 공지를 요청한 일반 시민과 해당 지역의 언론사들은 공공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과 단체에 성실히 사전 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50개 주 중, Ohio 주만이 개인과 영리기업들에게 회의 공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5. 사전 공지의 방법은 다양하다.

사전 공지는 공공기관 건물 내 지정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부터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공지까지 다양하다.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해,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을 망라한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회의 개최를 공표하고 있다.

〈표 9〉 주별 회의공개법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주명	내용
Alab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함 알라배마 주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회의공지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포함. 단, 의제는 제공하지 않음 개인 또는 자산에 해를 끼치는 등 예외적 경우, 비상회의 개최를 허용함
Alas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의거, 모든 회의는 합당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공지는 날짜, 시간, 장소, 화상회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공지는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야 하며, 공공기관 사무소 또는 지정 장소에 게시되어야 함
Ariz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회의 개최는 일요일을 제외한 최소 24시간 전에 공표되어야 함 비상회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예외적인 경우, 결과를 24시간 내 공표하여야 함 회의 공지는 회의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공표된 의제 외의 것은 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Arkans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하여야 함 비상회의는 2시간 전 지역 언론에 공표하여야 함
California	<p>Brown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은 회의개최 최소 3일 전에 정기 회의에 대한 의제와 공지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게시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모든 주제를 포함함 정부는 정기회의 개최 최소 3일(72시간) 전에 메일로 공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발송하여야 함 게시된 의제는 회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됨. 게시된 의제 외의 새로운 주제는 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음 단, 위원회의 2/3이 표결로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음 특별회의는 24시간 사전 공지(의제 포함)로 개최될 수 있음 비상회의는 1시간 사전공지로 개최될 수 있음. 단,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심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함 <p>Bagley-Keen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모든 회의 개최는 10일 전 서면과 온라인으로 공표되어야 함 공지는 회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함 공지는 회의의 시간, 날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함 공개회의와 특별회의의 경우,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의 목록이 공지되어야 함.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를 한정함

주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위원의 2/3의 표결로, 긴급 의제에 대한 논의를 허용함 • 단, 법률은, 진행 중인 소송과 입법, 새로운 법률 의견, 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동산의 매입과 판매, 시험 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우, 10일 전 공표 없는 특별 회의의 개최를 허용함 • 그럼에도, 주 정부는 특별 회의의 개최에 대한 공지를 언론과 공지를 요구한 개인에게 2일 전에 공지하여야 함 • 단,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심대히 침해되는 1시간 공지로 비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상회의의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언론에 고지되어야 함
Colora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공지는 개최 24시간 전에 공공기관 내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함 • 공지 게시를 위한 지정 장소는 매년 첫번째 회의에서 정해짐 • 의제 관련 정보도 공지에 포함되어야 함
Connecti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정부 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모든 정기회의 일정을 공표하여야 함 • 기관은 정기회의 일정을 서면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회의의 의제는 최소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게시되어야 함 • 단, 위원 2/3의 표결로 의제는 무시될 수 있음 • 특별회의의 경우, 24시간 고지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음 • 공지는 시간, 날짜, 논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의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의제 외의 사항은 논의할 수 없음 • 비상회의는 사전 공지 없이 개최될 수 있음. 단, 72시간 내에 긴급의 적합성이 명시된 회의록을 게시하여야 함
Dela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의 개최는 최소한 7일의 사전 공지가 필요함 • 공지는 시간, 장소, 잠재적 의제를 포함하여야 함 • 의제는 회의 전에 변경될 수 있음 • 특별회의, 일정이 재조정된 회의의 개최를 위해서는 24시간 사전 공지가 필요함
Geor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의 공지 게시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음 • 모든 기관은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 기관들은 회의 공지를 요구하는 언론기관에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음 • 단, 24시간 전 공지를 지키지 못하는 비상회의를 예외적으로 허용: 회의록에 비상회의 개최 사유 명시되어야 함 • 법은 기관이 회의 이전, 합당한 기간 내에 의제를 게시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의제는 구속력이 없으며 기관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다룰 수 있음 • 예상되는 모든 문제의 의제는 요청 시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회의 이전에 회의 장소에 반드시 게시되어야 함
Hawa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정기, 특별, 또는 일정이 조정된 회의 등의 서면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공지는 회의의 의제,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하여야 함 • 공지는 회의 개최 최소 6일 전에 제출되어야 함 • 제출된 의제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위원 2/3의 표결로 의제를 추가할 수 있음 • 공공의 건강, 안전, 행복에 대한 즉각적 침해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 2/3의 표결로 비상회의를 개최함
Ida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부 기관의 회의는 5일의 공지가 요구됨 • 공지는 시간, 날짜를 포함함 • 회의의 의제는 회의 개최 48시간 내에 게시됨 • 기관이 정기적 회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1년 중 정해진 시점에 발표하여야 함 • 법은 개인 또는 자산에 대한 손해, 현저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회의의 개최를 허용함

주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회의는 24시간 공지만이 요구됨 • 특별 회의의 공지는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매 회계년도 초에 정기 회의의 일정, 날짜, 시간, 장소를 게시하여야 함 • 정기 회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10일 전에 고지되어야 함 •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의제,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한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48시간 공지의 예외가 적용됨. 단, 가능한 신속한 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앞선 회의 이후 24시간 이내, 앞선 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집되는 후속 회의의 경우, 의제의 변화가 없다면, 48시간 공지 규정의 예외가 적용됨
Ind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공공회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최소한 회의 개최 48시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전에 공표하여야 함 • 단, 재소집된 회의에는 48시간 공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정기 회의는 1년에 1회 고지됨 • 생명, 재산이 위협받고, 즉각적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비상회의의 개최가 허용됨 • 비상회의의 개최는 위원들에게 고지되는 동시에 언론에도 고지하여야 함 • 고지 규정은 주 의회에 적용하지 않음
Io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은 모든 회의에 있어 최소 24시간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음 • 공지는 시간, 장소, 잠재적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상회의가 허용됨. 단, 비상회의는 회의록을 통해 긴급성을 명시하여야 함
Kentuc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모든 회의는 정기 일정에 개최되어야 함. 이 일정은 공공에 공개되어야 함 • 법은 정기 회의 외에 비정기적 특별회의를 허용함 • 공공기관은 최소 24시간 전에 회의개최를 공표하여야 함 • 회의 공지에는 의제가 포함됨. 의제는 회의의 논의 사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 • 공공기관의 24시간 공지는 공지를 요청한 뉴스 기관에도 제공됨
Louis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 정기 회의 일정을 공표하여야 함 • 기관들은 모든 정기회의, 특별회의에 대한 24시간 서면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공지에 의제 포함함 • 공표된 의제 외의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위원 2/3의 표결이 필요함 • 공공기관은 회의 공지를 요청한 언론기관에 공지를 해야 함
Massachuset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회의 개최를 공표함
Michi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의 일정은 이후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매해 첫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공표함 • 정기회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공지함 • 변경된 정기회의 18시간 전에 공지가 반드시 게시되어야 함 • 공공기관은 원 회의의 36시간 안에 고지없이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음 • 생명 또는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Minnes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들은 주 사무실에 정기 회의의 일정을 게시할 의무가 있음 • 정기회의, 특별회의의 변경 시, 회의 24시간 전,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이 공지는 공지를 요청한 개인들에게 발송됨 • 비상회의는 24시간 사전 공지보다 짧은 공지로 개최될 수 있음. 단, 공지를 요청한 미디어에 최선의 노력으로 연락을 취해야 함 • 원 회의에서 공지된 경우, 회의는 후회되거나 재소집될 수 있음
Mississip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정기회의 일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단, 정기회의를 위한 추가적

주명	내용
	<p>공지는 요구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의의 경우, 1시간 공지를 공공 장소에 게시함 • 화상회의의 경우, 5일 간의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화상회의 공지는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화상회의를 열 수 있음
Missou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 24시간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공지는 공공기관 사무실 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공지를 요청하 뉴스 기관들에 전달되어야 함
Nebras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공공기관에 회의 시간, 날짜, 의제를 포함한 적합한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의제는 주정부 회의 24시간 이내 변경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은 회의 공지를 요청한 뉴스 매체의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회의를 공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Nev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공적 회의에 앞서 3일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음 • 공지는 시간, 장소,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법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의 개최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New Hampsh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회의 24시간 전에 공공 사무실과 온라인 또는 지역 신문에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비상회의는 허용되나, 회의록에 긴급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 모든 시도들은 공공에 고지되어야 함
New Jers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모든 회의의를 위한 48시간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공지는 회의의 시간, 장소, 의제를 포함함 • 공지는 공공기관 사무실에 게시하고, 최소한 두 곳의 신문에 전달되어야 하며, 주 국무장관 또는 지역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회의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함 • 비상회의는 기관의 2/3 표결로 소집될 수 있음 • 비상회의의 주제는 긴급한 안전에 국한되어야 하며, 공지는 반드시 가능한 신속히 게시되어야 함
New Mexi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모든 회의의 적합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적합한 공지는 매년 초 각각의 기관에 의해 결정됨 • 공지는 회의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회의 의제는 회의 개최 최소 24시간 전에 공표되어야 함 • 공공기관은 공표된 의제만을 회의에서 다룰 수 있음.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임 • 원 회의에서 공지된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회의는 비공개 되거나 재소집 될 수 있음
New Y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회의 일정을 위한 일반적으로 1주일 전, 최소 72시간의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공지는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뉴스 매체에 전달되어야 함
Nor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또는 주정부 사무실에 정기회의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정기 회의 일정의 변경 시, 새로운 일정의 첫번째 회의 전 7일의 공지가 요구됨 • 정기 일정에서 벗어난, 비정기 회의의 경우, 48시간 전에 공지가 게시되어야 함 • 공지는 부서 지역사무소 내에 게시되어야 하고, 모든 뉴스 기관과 공지를 요청한 개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비상회의는 48시간 공지보다 짧은 시간에 소집될 수 있음. 단, 공지는 반드시 가능한 신속

주명	내용
	<p>히 뉴스 미디어에 전달되어야 함</p>
Nor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관들에 회의 정기 일정을 수립할 것을 장려함 • 정기 일정 외의 회의는 기관 구성원에 전달되는 동시에 뉴스 기관에도 제공되고 게시되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공지를 요청한 뉴스 매체에 공지를 해야 함
Oh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정기 회의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를 위해,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미디어 기관에 24시간 공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개인과 영리 기업들은 적정 수수료로 회의 공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음
Oklaho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매 12월 15일에 다음 해의 정기회의 일정을 마련해야 함 • 정기회의 일정의 변경 시, 주 국무장관 또는 서기에 10일의 고지가 요구됨 • 일정 고지 이외에 모든 회의는 회의 24 시간 전에 공청회 사무실에 24 시간 공지를 게시해야 함 • 이 공지에는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를 제한하는 의제가 포함되어야 함 • 재 회의를 위한 공지는 원 회의에서 제공되어야 함 • 제출된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 회의는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외부에 게시해야 하며, 요청한 모든 개인 및 뉴스 기관에 통보해야 함 • 법은 모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할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회의를 허용함
Oreg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회의에 관한 적합한 공지를 대중에 제공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의 경우, 공지를 요청한 개인과 미디어에 최소 24시간 공지를 주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24시간 공지보다 짧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단 회의록에 긴급성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함
Pennsylv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들은 모든 회의를 광고하고 공지를 제공해야 함 • 장소, 시간, 날짜를 포함하여 3일 전에 각 회계 연도의 첫 정기 회의를 공개해야 함. 그런 다음 나머지 정규 모임 일정을 공개해야 함 • 기관은 회의 시작 시간 24 시간 전, 각 특별 회의 또는 각 정기 또는 특별 회의 일정에 대해 공고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공고는 필요하지 않음 • 공지는 사무실 밖의 게시나 지역 신문 기사로 제공될 수 있음
Rhode I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 기관은 매년 초에 정기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공공 기관은 회의 시간, 날짜, 의제를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의제는 과반수 득표로 회의 중에 변경 될 수 있음. 단, 유익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의제를 변경할 수 없는 학교위원회는 제외됨 • 공공 기관은 주요 회의 장소 외부에 공지문을 게시해야 하며, 학교위원회는 해당 지역 신문 사에 공지를 게시해야 함 • 비상회의는 공공 기관의 다수결로 개최 될 수 있음. 단, 가능한 신속히 공지를 게시하고, 회의록에 48 시간 미만의 통지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여야 함
Sou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각 연도의 시작에 정기 회의 공지를 게시해야 함 • 공공기관이 회의 24시간 전에 의제를 게시 할 것을 요구함 • 모든 일정 변경 또는 특별 회의는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공공기관은 사무실에 공지문을 게시하고, 회의 개최 공지를 요청한 개인 또는 뉴스 기관에 통지해야 함
Sou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 기관은 회의 시간, 장소, 의제를 포함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공공기관은 사무실의 중요한 위치에 고지를 게시하고, 통지를 요청한 모든 언론 매체에 연락해야 함

주명	내용
Tex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은 대중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개 회의 의제를 포함하여 7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긴급사태나 재난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공공기관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사전 공지없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음
Ut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관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 회의 시간, 장소, 제안된 의제를 포함한 공지를 제시해야 함 • 공지는 공공 기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공지를 요청한 지역신문 및 모든 매체에 보내야 함 • 공공 기관은 최소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 • 법은 24시간 공지 시간 이내에 개최되는 비상회의를 허용함
Verm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 기관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공지를 게시할 것을 요구함 •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이외의 특별 회의에는 공공 기관의 관할 구역 내 3개 이상의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는 24시간의 공지가 수반되어야 함 • 법은 다음 회의가 이전 회의에서 발표된다면 사전 통지없이 회의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뉴스 기관에 통지해야 함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회의 개최 최소 3일 전에 모든 회의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함 • 특별 또는 비상회의의 경우, 공공기관의 구성원에게 공지가 통지되는 동시에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도 통지되어야 함
Washing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 회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요구함 • 이 일정은 워싱턴 주 등록부에 매년 1월 중 또는 그 이전에 게시되어야 함 • 특별 또는 재조정 회의는 반드시 공공기관 본부에 게시하고 모든 지역 언론기관에 24시간 통보해야 함 • 연기된 회의는 재조정될 수 있지만 미리 24 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West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 회의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의 발표에 관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함 • 주 행정부는 5일 전에 주 등록부에 회의를 게시해야 함
Wiscon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은 시간, 날짜, 장소(가능한 한 정확하게) 및 회의 주체를 표시하여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함 • 기관이 회의 일부가 비공개될 것으로 예상하면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와 함께 이를 표시해야 함 • 기관은 공지를 대중, 회의 공지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한 뉴스 매체 및 지정 공식 신문에 배포하고 소통하여야 함 • 공지는, 이와 같은 요건들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은 한,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Wy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기관이 정기 회의에 관한 자체 규칙 및 규정을 또는 특별 회의에 관한 성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의 공지는 모든 지역 뉴스기관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회의 시간, 날짜, 논의 주제의 목록을 특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원 회의에서 제공한 공지에 따라 회의를 휴회할 수 있음 • 비상회의는 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비상회의에서 취한 모든 조치는 일시적이므로 다음 공개 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함

6. 시사점과 과제

모든 공공기관은 정기회의, 비정기회의, 비상회의 등 회의 성격에 따라 사전공지 절차 및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회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모두 채택되어야 한다.

정기회의는 이와 같이 마련된 일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개별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 게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기회의의 경우,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개최되어야 함. 비정기회의가 회의공개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회의 역시 비정기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공개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비상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회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비상회의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기회의와 비상회의의 개최 공지는 회의 참석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는 동시에, 시민과 언론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회의개최에 대한 공지는 회의 시간, 날짜, 장소, 의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없이 재공지하여야 한다.

이미 공표된 의제에 대한 변경은 불허하여야 한다. 이미 공표된 의제의 변경이 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첫째, 긴급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성이 충족되고, 둘째 이를 회의 참석자 2/3의 표결 찬성을 요건으로 의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하며, 사전 공지를 수발신하는 데 있어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민은 회의 개최의 사전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이 권리와 의무가 회의공개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V.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

1.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법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모든 행위 및 조치는 무효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법원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 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의 가장 중요되는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이다.

2.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의공개법 위반이 발생 또는 인지된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민 누구나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모든 주의 회의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단, 소송은 위법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또는 위법 회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가장 긴 기간이 주어지는 알래스카 주의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 실제적 위반이 발생한 2년 이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인디애나 주의 경우, 3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각 주별로 30일, 45일, 60일, 90일, 120일 등 다양한 소송제기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 실제로 위법이 발생한 날과 위법을 인지한 날을 달리하여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 계약 관련 사항의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을 일반적 행정조치에 대한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보다 짧게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유타 주의 경우, 채권, 지폐 발행과 관련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외 다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한편, 아이다호 주의 경우,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과 영장을 위한 소송은 18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

많은 주에서 공공기관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30일, 뉴 멕시코 15일, 미시시피 14일, 노스 타코타 7일, 켄터키 3일의 정정 기간 주어진다. 다만,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소송은 기각이 된다.

3. 회의공개법 위반,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하와이 주에서는 회의 개최 6일(six calendar days) 이전에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의 사무실의 서면공지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부서의 장에게 위반에 대해 즉시 통지하고, 회의 자체를 취소시킨다. 코네티컷 주의 경우, 상고인의 이의제기가 회의공개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의 제기를 받은 후 72시간 내에 심리를 열어야 함. 또한 이 심리 개최는 개최 48시간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이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50개 중 38개 주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경범죄, 징역형 등을 부과한다.

벌금 부과를 명시한 주가 24개주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를 명시한 주가 7개 주, 벌금과 경범죄를 함께 명시한 주가 5개주이다.

회의공개법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는 오클라오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3개 주이다.

① 벌금

벌금의 경우, 로드 아일랜드 주의 최고 5,000USD부터 20USD까지 벌금의 액수는 다양하다. 단 로드 아일랜드는 벌금을 개별 구성원이 아닌 기관에 부과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벌금을 위원회 구성원에 부과하고 있다.

벌금을 최고 500USD와 최고 100USD로 정한 주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다.

4개 주에서는 1차 위반 시의 벌금과 그 후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② 경범죄

12개주에서는 회의공개법 위반을 다양한 등급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만을 명시한 주가 7곳, 경범죄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 주가 5곳이다.

③ 징역형

3개주는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클라오마 주의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1

차 위반에 대해 100달러 벌금과 30일 징역형, 그 후 범 위반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 텍사스의 경우, 100~500달러의 벌금과 1개월과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 외,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주가 12곳이었다.

그 외,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 지불 책임이 있다.

〈표 10〉 회의공개법 위반시 처벌 및 벌금

유형	주 (개)	양형	기타
벌금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5,000USD(기관에 부과) • 최고 1,000USD 또는 월급여의 절반 • 최고 1,000USD (2) • 최고 500USD (6) • 100~500USD • 최고 300USD • 최고 100USD (6) • 20~100USD • 벌금(변호사비용 포함/특정되지 않음) • 1차 위반 250~1,000USD/ 그후 위반 1,000~2,500USD • 1차 위반 1,000USD/ 2차 위반 2,000USD • 1차 위반 500USD/ 2차 위반 100~1,000USD • 1차 위반 100USD/ 그 후 위반 100~500USD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 지급 책임이 있음
경범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범죄 (2) • 2급 경범죄 • C급 경범죄 (2) • B급 경범죄 • 1차 위반 4급 경범죄 / 그 후 위반 3급 경범죄 	
벌금 + 경범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USD+2급 경범죄 • 500USD+경범죄 (2) • 적정 벌금+경범죄 • 750USD+경범죄 	
벌금 + 징역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USD+1년 징역형 • 1차 위반 100USD+30일 징역 / 2차 위반 200USD+징역 • 100~500USD+1개월~6개월 징역형 	
명시 없음	11		
합계	50		

5. 회의공개법을 무시하면 쫓겨난다

또한,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주 등에서는 법을 위반한 공직자 혹은 위원회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아이오와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3번 위반한 자,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서는 단 한 차례라도 법을 위반한 자를 면직 대상으로 할 수 있다.

6. 소송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는 측에 지급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주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기관 또는 개별 구성원에게 부과된다.

7. 소송이 아닌 길을 모색한다

다만, 소송을 통한 이의 절차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방식이나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송을 선택 선택할 수 있을까?

패소의 위험성은?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시민은 변호사 비용까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네티컷의 정보공개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 일리노이즈의 공적 접근 카운슬러(Public Access Counselor), 미시시피 윤리위원회(Mississippi Ethics Commission), 뉴욕의 열린정부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 오레건 정부 윤리 위원회(Oregon Government Ethics Commission),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South Dakota Open Meetings Commission) 등 위원회의 기능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코네티컷의 정보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회의에 따른 결정과 조치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유사와 기능을 하는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는 주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5명의 법률가로 구성된다.

50개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주별 공개회의 범위 관련한 전자회의 포함 내용

주명	내용
Alab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라바마 주 시민 누구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피고가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첫번째 심리가 진행됨 피고가 이의제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7일 이내 심리가 진행되어야 함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회의 구성원들에게 최고 1,000USD 또는 월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강제할 권리가 있음 정부기관은 위반자 개인들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법 위반을 인지 후 60일 이내, 실제적 위반이 발생한 2년 이내 소송 제기하여야 함
Alas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소송은 180일 이내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단, 기관은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소송을 피할 수 있음 법원은 법 위반 여부를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기준으로 판단함
Ariz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개법 위반에 영향을 받는 시민 누구나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위반자, 이를 인지하고도 도운 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거나 동의한 자에게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음 법원은 위반자를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들은 무효화할 수 있음
Arkans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개법 위반은 C급 경범죄로 간주됨. 법원은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평가할 권리가 있음. 단,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음
Califor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공개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됨 개인은 90일 이내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소송에 앞서 공공기관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아야 함 30일 경과 후, 개인은 1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잘못을 바로잡았을 경우, 소송은 기각됨
Colora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하여 원고 비용과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Connecti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은 공공기관의 회의공개법 위반을 인지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주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위원회는 3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60일 이내 위반 여부를 판단함 • 상고인이 법 위반을 막으려고 할 경우, 72시간 내에 심리를 열고, 심리 개최, 최소 48시간 전에 이를 공표함 • 정보공개위원회는 기관 또는 개인에 20-1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정보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 •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은 지방법원, 이후 상고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
Dela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된다면, 델라웨어 거주민은 주 법무장관에 이를 고지할 수 있음 • 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20일 이내, 법 위반 여부를 답변하여야 함 • 만약 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시민은 법 위반 발생 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법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하고,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Flori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500USD의 벌금해 처해짐 • 회의공개법 위반은 2급 경범죄로 간주됨
Geor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체 누구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상대로 법 위반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 회의공개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500USD의 벌금이 부과됨
Hawa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최소 6일(6 calendar days) 이전에 부 주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의 사무실의 서면 공지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부 주지사나 카운티 서기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부서의 장에 위반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의 회의는 취소됨 • 의장 또는 부서장은 회의 취소 공지가 회의장소에 고지될 것,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회의공개법의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적절한 벌금이 부과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하고,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Ida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들은 회의공개법을 강제할 책임을 짐 • 회의공개법을 위반 한 회의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 다른 처벌과 영장을 위한 소송은 18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공공기관 스스로 위반을 인지하고 위반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반을 타개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500US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 60일 이내 또는 이를 인지한 후 60일 이내, 누구든 위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은 위반을 발견한 60일 이내 공적 접근 카운슬러(Public Access Counselor)에 제기

주명	내용
	<p>한 소송을 심의해줄 것을 주 법무장관 사무실에 요청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을 선제적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된 회의의 기록을 공표하고, 비 공개회의에 따른 조치의 무효를 명령할 수 있음 • 카운슬러는 해당 기관에 7일 내 응답할 것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카운슬러는 그 문제에 대해 구속력있는 의견을 표명할 주 법무장관에게 파일을 제출함 • 회의공개법 위반은 C급 경범죄로 간주됨
Ind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된 경우, 개인은 위법한 회의 개최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이 회의의 의한 결정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준들의 주요 근거는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Io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적 기관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100-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의 비공개에 반대 표결한 개별 구성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3번 위반한 개인을 위원을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Kans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캔자스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어떤 개인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 • 위반자는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과받음. • 21일 내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법한 회의에 따른 모든 조치는 반복될 수 있음
Kentuc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되었다고 인식한 개인은,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함 • 해당 공공기관은 3일 안에 위법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만약 공공기관이 시정에 실패하거나, 거절한다면, 60일 이내에 주 법무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주 법무장관은 10일 이내 요청에 답변하여야 함 • 주 법무장관의 결정에 30일 이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다면,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소송은 법 위반으로부터 60일 이내 순회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 순회법원은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주 법무장관 결정의 재고를 요청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Louis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 누구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각각의 위반에 대해 최대 100USD의 벌금과 변호사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Ma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에는 최대 500USD 벌금이 부과됨
Mary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을 인지한다면, 위반을 발견한 45일 내에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

주명	내용
	<p>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개별 구성원에 최대 1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Massachuset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이상의 시민,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는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만약 21일 이내 소송이 제기된다면, 판사는 불법 회의에 따른 모든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 • 법원은 기록을 공표하고, 앞으로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Michi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되었다고 인지한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이 공식 회의록 공표 후 60일 이내, 계약과 관련된 사항 30일 이내 제기된 소송에서 회의공개법의 위반사항을 확인한다면, 공공기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판사는 각각의 위반에 대해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두번째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2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최고 5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이 부과됨
Minnes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회의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인지한다면 누구든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개별 공무원에 최고 3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동일 공공기관에서 회의공개법을 3번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 그를 면직시킬 수 있음
Mississip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미시시피 윤리위원회(Mississippi Ethics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관에 고지하고, 기관은 14일 내에 응답하여야 함 • 응답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기각하거나 심리를 개최함 • 윤리위원회는 위반에 대해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개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형평법 법원(chancery cour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Missou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되었다고 인지한 경우, 피해받은 개인,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이 판단의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 공공기관은 회의공개법 위반으로 고발(기소)된 공무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Mont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회의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인지한다면 누구든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은 불법 회의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Nebras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브래스카 시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위반 120일 이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최종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은 조치 후 1년 내에 끝나야 함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1차 위반의 경우 4급 경범죄, 그 후 위반의 경우 3급 경범죄로 유죄를 받음
Nev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또는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로 간주됨 • 불법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범죄에 해당함
New Hampsh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의 위반으로 피해입은 개인은 누구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New Jers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의 위반을 인지한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 따른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1차 위반의 경우 100USD, 그 후의 위반의 경우 100-500USD를 부과할 수 있음
New Mexi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은 먼저 공공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만약 공공기관이 15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개인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개별 공무원은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최고 5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New Y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열린 정부 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는 회의공개법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의견을 공표할 권한을 가짐
Nor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판사는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지거나 논의된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Nor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90일 이내 법무장관에게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무장관이 위반을 확인한 경우, 기관은 7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아야 함 • 만약 기관이 법무장관의 결정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면, 기관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고등법원의 소송은 위법이 일어나고서 60일 이내, 법무장관의 의견 공표 후 3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변호사 비용과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Oh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최고 5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위반자를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Oklaho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최고 500USD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Oreg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누구나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하여 60일 이내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개인은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처벌을 할 수 있는 Oregon Government Ethics Commission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Pennsylv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 개최로부터 30일 또는 불법행위를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hode I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 아일랜드 주 시민은 누구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주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주 법무장관에 대한 소송은 회의공개법 위반 180일 이내 또는 법 위반 인지 후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시민 누구나 법 위반 인지 후 180일 이내 또는 주 법무장관의 의견 공표 후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 기관에 최고 5,0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Sou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1차 법 위반에 대해 100USD의 벌금과 30일 징역, 그 후 법 위반에 대해 200USD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Sou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2급 경범죄임 • 개인 누구나든 지방 법무장관 또는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South Dakota Open Meetings Commission)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위반을 확인한 법무장관은 회의공개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 • 회의공개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의 다수결로 모든 회의공개 사건을 결정함 • 회의공개위원회는 주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됨
Tenness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Tex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화될 수 있음. • 위반자는 100-500USD의 벌금 그리고(또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C급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주명	내용
Ut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또는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부과하고 B급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채권, 지폐 발행과 관련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외 다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Verm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1차 위반에 대해 250-1,000USD의 벌금을, 그 후의 위반에 대해 1,000-2,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Washing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화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개인들에게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모든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West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은 위법한 회의 후 12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순회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음. • 법원은 1차 위반에 대해 최고 500USD의 벌금,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Wiscon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을 알고도 회의에 참석한 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행위 또는 누락으로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기관의 구성원에 벌금을 부과함 • 회의 비공개에 반대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Wy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로 간주됨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범죄 처벌과 75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부록1] 미국 50개주 회의공개법명과 법령

NC	주 영문명	한글 주	법 영문명	법조항
1	Alabama	앨라버마	Alabama Open Meetings Act	2006 Alabama Code - Title 36 - Chapter 25A
2	Alaska	알래스카	Alaska Open Meetings Act	Alaska Statutes Title 44. State Government § 44.62.310. Government meetings public
3	Arizona	애리조나	Arizona Open Meetings Act	Title 38 - Public Officers and Employees: Chapter 3 Conduct of Office :Article 3.1 Public Meetings and Proceedings: A.R.S. §§ 38-431 to 431.09
4	Arkansas	아칸소	Arkansas Open Meetings Act	2010 Arkansas Code Title 25 - State Government Chapter 19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25-19-106 - Open public meetings.
5	California	캘리포니아	California Open Meeting Act (Brown Act, Bagley-Keene Act)	Statutes 54950-54963 of the California Code (Brown Act) / Statutes 120-11132 of the California Code (Bagley-Keene Act)
6	Colorado	콜로라도	Colorado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Statute 24-6-402 of the Colorado Code
7	Connecticut	코네티컷	Connecticut Open Meetings Law	Statutes 1-200 through 1-259 of the State code
8	Delawre	델라웨어	Delaware Open Meetings Law	Title 29, Chapter 100, Statutes 10001-10006 of the Delaware Code (§ 10004 Open meetings)
9	Florida	플로리다	Florida Open Meetings Law	Statute 286 of the Florida Code
10	Georgia	조지아	Georgia Open Meetings Act	Chapter 14, Statutes 50.14.1-6 of the Georgia Code
11	Hawaii	하와이	Hawaii Sunshine Law (PUBLIC AGENCY MEETINGS AND RECORDS)	Part I of chapter 92 of the Hawaii Revised Statutes

NC	주 영문명	한글 주	법 영문명	법조항
12	Idaho	아이다호	Idaho Open Meeting Law	Title 67 chapter 23 statutes 40-47 of the Idaho statutes
13	Illinois	일리노이	Illinois Open Meetings Act	Title 5 chapter 120 statutes 1-7.5 of the Illinois code
14	Indiana	인디애나	Indiana Open Door Law	Title 5, chapter 14, statutes 1.5.1-8 of the Indiana code (IC 5-14-1.5 Chapter 1.5. Public Meetings (Open Door Law))
15	Iowa	아이오와	Iowa Open Meetings Law	Iowa Code Chapter 21 - OFFICIAL MEETINGS OPEN TO PUBLIC (OPEN MEETINGS)
16	Kansas	캔자스	Kansas Open Meetings Act	2006KansasCode-75-4317,75-4320b
17	Kentucky	켄터키	Kentucky Open Meetings Act	Statutes 61.800-61.850 of the Kentucky revised statutes
18	Louisiana	루이지애나	Louisiana Open Meeting Law	Statutes 42.4.1-13 of the Louisiana code
19	Maine	메인	Maine Open Meeting Law	Title 1, chapter 13 of the Maine Revised Statutes
20	Maryland	메릴랜드	Maryland Open Meetings Act	Title 10, subtitle 5 of the Maryland code
21	Massachusetts	메사추세츠	Massachusetts Open Meetings Act	Chapter 30A, statutes 11A-11C and Chapter 34, statute 9 and chapter 29, statute 23A-D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Laws
22	Michigan	미시간	Michigan Open Meetings Act	Act 267 of 1976
23	Minnesota	미네소타	Minnesota Open Meeting Law	Section 471.705 of the Minnesota Statutes
24	Mississippi	미시시피	Mississippi Open Meetings Act	Title 25, Chapter 41, Sections 1-17 of the Mississippi Code
25	Missouri	미조리	Missouri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Chapter 610 of the Missouri Revised Statutes

NC	주 영문명	한글 주	법 영문명	법조항
26	Montana	몬태나	Montana Open Meetings Law	Montana Code Annotated 2009 Title 2 Chapter 3 Part 2.
27	Nebraska	네브래스카	NEBRASKA OPEN MEETINGS ACT	Statutes 84.1407-84.1414 of the Nebraska Code
28	Nevada	네바다	Nevada Open Meeting Law	Chapter 241 of the Nevada Revised Statutes
29	New Hampshire	뉴햄프셔	New Hampshire Open Meetings Law	Chapter 91A of the New Hampshire Code
30	New Jersey	뉴저지	New Jersey Open Public Meetings Act	Title 10 Chapter 4 of the New Jersey code
31	New Mexico	뉴멕시코	New Mexico Open Meetings Act	Statutes 10.15.1-4 of the New Mexico Annotated Statutes
32	New York	뉴욕	New York Open Meetings Law	Article 7 sections 100-111 of the New York code
33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Open Meetings Law	Article 33C, statutes 143-318.9-18 of the North Carolina code
34	North Dakota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Open Meetings Statute	Statutes 44-04-17.1 through 44-04-21.2 of the North Dakota Code
35	Ohio	오하이오	Ohio Open Meetings Law	Statute 121.22 of the Ohio Revised Code
36	Oklahoma	오克拉오마	Oklahoma Open Meetings Act	Statutes 301-314 of the Oklahoma Statutes
37	Oregon	오리건	Oregon Public Meetings Law	Chapter 192 of the Oregon code
38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Sunshine Act	Title 65 statutes 701-726 of the Pennsylvania code
39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Open Meetings Act	Chapter 42-46 of the Rhode Island General Laws
40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Open Meetings Law	Title 30 Chapter 4 of the South Carolina Code of Laws
41	South Dakota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Open Meetings Law	Chapter 1, section 25 statutes 1-9 of the South Dakota Codified Laws

NC	주 영문명	한글 주	법 영문명	법조항
42	Tennessee	테네시	Tennessee Open Meetings Law	Title 8, chapter 44, part 1 of the Tennessee code
43	Texas	텍사스	Texas Open Meetings Act	Title 5A chapter 551 of the Texas Government Code
44	Utah	유타	Utah Open and Public Meetings Act	Title 52, chapter 4 of the Utah Code
45	Vermont	버몬트	Vermont Open Meetings Law	Title 1, Chapter 5 of the Vermont Statutes
46	Virginia	버지니아	Virginia Open Meetings Law	2010 Code of Virginia, Title 2.2, Chapter 37
47	Washington	워싱턴	Washington Open Public Meetings Act	Chapter 42.30 of the Revised Code of Washington
48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Open Governmental Proceedings Act	Statute 6-9A of the West Virginia Code
49	Wisconsin	위스콘신	Wisconsin Open Meetings Law	Statutes 19.81-19.98 of the Wisconsin statutes
50	Wyoming	와이오밍	Wyoming Public Meeting Law	Chapter 16 Article 4 of the Wyoming statutes

[부록2] 미국 연방 회의공개법 번역문

Section 552b 공개회의

(a)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관"이란 section 552(e)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구가 이끄는 기관 그리고 기관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의 분과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구성원의 다수를 해당 직위에 임명한다.
- (2) "회의"란 공식 기관 업무의 공동 수행 또는 처분을 결정하거나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개별 기관 구성원 수 이상이 참여한 심의를 의미한다. 단, subsection (d) 또는 subsection (e)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심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 (3) "구성원"이란 기관을 이끄는 합의기구에 속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b) 구성원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subsection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全) 기관 회의의 전 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c) 기관이 공익을 위해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 subsection (b) 두 번째 문장은 기관 회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경우, subsection (d)과 subsection (e)은 이 조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는 회의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A) 행정 명령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B)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안
- (2) 오로지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및 관행 관련
- (3) 법률(section 552 이외)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 단, 해당 법률은 (A) 쟁점에 관한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안을 규정하거나, (B) 구체적 보류 기준을 확립하거나 보류되는 사안의 구체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 (4) 개인에게서 얻거나 특권이 성립됐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및 상업적 정보나 재정적 정보
- (5) 특정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 (6)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적 성질의 정보를 공개한다.
- (7)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 또는 (서면) 수사 기록에 포함됐을 정보. 단, 이러한 기록이나 정보의 제출은 (A) 법 집행 절차를 방해, (B) 공평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 (C) 개인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구성, (D)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사법기관이 범죄 수사 중에 수집하거나 합법적 국가 안보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에 취재원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기밀 정보를 공개, (E) 수사 기법과 절차를 공개, (F) 법 집행 요원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 (8)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그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해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현황 보고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정보.
- (9) 성급한 공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 (A)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 (i) 통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현저한 금융 투기를 야기하거나 (ii) 특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
- (B) 기타 기관의 경우,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단, 기관이 제안 조치의 내용이나 성질을 이미 일반에 공개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관이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적용되지 않는다.
- (10) 기관의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이나 절차, 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의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한 기관의 참여, 이 편 제554조의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 청취 후 기록에 대한 결정 등 기관의 공식 재결에 관한 구체적 사건에서 기관의 시작, 수행이나 처분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
- (d)(1) subsection (c)에 따른 조치는 (subsection (a)(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기관 구성원의 전체 중 다수가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에 찬성한 경우에만 취한다. 기관 구성원의 표결은 각각의 기관 회의에서 subsection (c)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 또는 subsection (c)에 따라 유보하기로 제안된 정보에 대해 이뤄진다. 일련의 각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예정된 경우, 일련의 회의에서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제안된 부분이나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를 1회 표결할 수 있다. 해당 표결에 참여한 기관 구성원 각각의 표결은 기록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 회의의 일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subsection (c) paragraph (5), (6), (7)에 언급된 이유 중 하나를 근거로 기관이 해당 부분을 일반에 비공개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기관은 구성원 1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기록 표결로써 표결한다.
- (3)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이 이뤄지면, 기관은 1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 결과 사본을 일반에 공개한다. 회의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기관은 subsection (d) paragraph (1) 또는 (2)에 따른 표결 사항과 해당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조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인원과 그 소속에 관한 목록을 1일 이내에 일반에 공개한다.
- (4) 회의의 대부분이 subsection (c) paragraph (4), (8), (9)(A), (10) 또는 이러한 사유의 결합을 근거로 적절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나, 기관은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시작할 때에 회의의 비공개분을 비공개하기로 기록 표결로써 표결하는 경우, 규칙으로 해당 회의나 회의 일부를 비공개하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하는 표결의 사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subsection (d) paragraph (1), (2), (3) 그리고 subsection (e)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회의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은 subsection (c)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 및 회의 일부의 시간, 장소 및 주제를 일반에 공고한다.
- (e)(1) 각 회의에서 기관은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일반 공개 여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기관 구성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고한다. 기관 구성원의 다수가 해당 회의를 조기에 소집해야 한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공고하고, 회의를 조기에 소집하는 경우에 기관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그리고 일반 공개 여부를 공고한다.
- (2) 회의의 시간이나 장소는 기관이 이러한 변경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일반에 공고한 경우에만 paragraph (1)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회의의 주제 또는 회의나 회의 일부의 일반 공개 여부에 대한 기관의 결정은 (A) 기관 전체 구성원의 다수가 기관 업무에 필요하고 변경에 대한 조기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기록 표결로써 정하고, (B) 기관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러한 변경과 해당 변경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공고한 경우에만 subsection (e)에 따른 공고로써 변경될 수 있다.
- (3) 또한 subsection (e)에 따른 각 공고 직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주제, 회의의 공

개 여부, 절차의 변경 그리고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공지 사항은 발행을 위해 공보에 제출된다.

(f)(1) subsection (c) paragraph (1)에서 (10)에 따라 비공개된 모든 회의에서 기관의 법무 자문위원이나 최고 법률책임자는 자신의 의견으로써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련하여 개별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 기관은 이러한 증명서의 사본을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기재한 회의 감독관의 진술서와 함께 보유한다. 기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각 회의의 절차나 회의의 일부를 전부 기록하며, 적절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단, subsection (c) paragraph (8), (9)(A), (10)에 따라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필사 기록이나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 중 하나를 유지한다. 해당 회의록에는 논의된 모든 사안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취해진 조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덧붙여 각 사안에 제기된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며 호명 투표의 기록(사안에 대한 각 구성원의 표결을 반영)과 그 사유가 기재된다.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문서는 이러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관은 의제의 항목 또는 회의에서 얻은 증인의 증언 항목에 대한 논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제(1)호에서 요구되는 경우)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즉시 일반에 공개한다. 단, 기관이 제(c)항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결정한 논의나 증언의 항목은 제외된다. 발언자 각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필사 기록, 회의록 또는 전자 기록의 필사 기록 사본은 복사하거나 필사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제공된다. 기관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에 대한 필사 기록의 완전한 사본, 회의록의 완전한 사본 또는 완전한 전자 기록을 해당 회의 이후 최소한 2년 또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가 개최되도록 한 기관의 절차가 종료된 후 1년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유지한다.

(g) 이 조의 요건을 따르는 각 기관은 미 행정위원회 의장실(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과 협의해, 이 조항의 제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의 요건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한다. 또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최소 30일 동안 공보에 공표한다. 기관이 여기에 규정된 기간까지 해당 규칙을 공포하지 않으면, 누구나 해당 기관이 이러한 규칙을 공포하도록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제한 기간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subsection (g)에 따라

공포된 기관 규칙일지라도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파기하고 해당 조항을 따르는 규칙의 공포를 요구하도록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1) 미 지방 법원은 확인판결, 금지명령구제 또는 적절한 다른 구제 방법으로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서 subsection (f)를 집행할 관할권을 갖는다. 누구나 이 조항의 위반이 발생한 회의 이전 또는 그 후 60일 이내에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이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회의의 공고를 초기에 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의의 공고 이후 60일 이전에 언제든지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 회의가 개최된 지역이나 문제되는 기관의 본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 법원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송달한다. 피고는 자신의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의 부분을 비공개로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러한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법원은 질서 있는 집행과 공익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형평법상 구제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조를 장래에 위반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또는 이 section의 subsection (c)에 따라 보류가 불가한 회의의 필사 기록, 전자 기록이나 회의록의 일부를 기관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2) 법률로써 기관의 조치를 검토할 권한이 다른 방식으로 부여된 연방 법원은 다른 준거법에 따라 소송 절차에 적절하게 참여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이 조에 대한 기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하다 판단되는 구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는 이 조의 위반이 발생한 기관 회의에서 취하거나 논의된 기관의 조치(이 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정보를 보류하는 조치 제외)를 파기, 금지 또는 무효화하는 관할권을 paragraph (1)을 근거로 단독 보유하도록 해석되지 않는다.

(i) 법원은 이 section의 subsection (g) 또는 subsection (h)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보수와 기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원고가 사소한 이유나 지연 목적으로 소송을 개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원고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원은 미국 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j) 이 조를 따르는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 (1) 이전 1년 동안에 발생한 이 조에 따른 기관 정책과 절차의 변경
 - (2) 개최된 회의의 수, 비공개 회의에 적용된 면제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 따른 공고 일 수(日數)의 목록
 - (3) 기관이 이 조를 실행하면서 발생한 소송이나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 (4) 이 조에 따른 기관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 법률의 변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 (k) 이 조는 이 chapter section 552에 따른 현재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이 section의 subsection (f)에 규정된 필사 기록, 전자 기록이나 회의록을 복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section 552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 subsection (c)에 규정된 면제에 따른다. 「미합중국법」 제44편제33장은 이 section의 subsection (f)에 규정된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및 회의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 (l) 이 조는 의회에 정보를 주지 않을 권한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관 회의나 회의 일부의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 (m) 이 section은 section 552a에 따라 개인이 접근 가능한 기록을 개인에게 주지 않을 권한을 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조에서 요구하는 필사 기록, 전자 기록 또는 회의록이 포함된다.

(Pub. L. 94-409 § 3(a), 1976년 9월 13일 삽입, 90 Stat. 1241; Pub. L. 104-66, tile III, § 3002, 1995년 12월 21일 개정, 109 Stat. 734.)

본문 참고

subsection (a)(1)에 언급된 section 552 subsection(e)는 Pub. L. 99-570, section 1802(b)에 따라 section 552(f)로 재지정됐다.

subsection (g)에 언급된 이 조의 제정일부터 180일 이후는 1976년 9월 13일에 승인된 Pub. L. 94-409의 제정일부터 180일 이후를 의미한다.

[개정]

1995년—Subsectio (j), Pub. L. 104-66은 subsection (j)를 전면 개정한다. 개정 전에 subsection (j)는 “이 section을 따르는 각 기관은 해당 요건의 준수에 대해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여기에는 일반에 공개된 기관 회의의 총수, 일반에 비공개되는 회의의 총수, 해당

회의를 비공개로 한 이유 그리고 소송에서 기관이 부담한 비용(기관이 지불했는지를 불문함)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기관에 제기된 소송의 설명이 포함된다."이었다.

발효일

Pub. L. 94-409의 section 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이 section의 subsection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아래 기재된 약칭의 주석 참조)의 규정은 제정일(1976년 9월 13일)부터 180일 후에 발효된다.

“(b) 「미합중국법」 title 5 section 552b subsection (g)는 이 법 section 3(a)로 삽입됨에 따라 제정(1976년 9월 13일)과 함께 발효된다.”

1976년 개정 법률의 약칭

Pub. L. 94-409의 section 1은 “이 법률[이 section 제정, 이 title의 amending section 551, 552, 556, 557, Pub. L. 92-463의 section 10, Title 39의 section 410]은 「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로 규정한다.

보고 요건의 종료

2000년 5월 15일에 발효된, 의회 보고서(House Document) No. 103-7(이 section의 subsection (j)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151면에 기재)에 열거된 연간, 반기 또는 기타 정기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효력 종료는 Title 31, 화폐 및 재정(Money and Finance)의 section 1113 아래에 주석으로 기재된 개정 Pub. L. 104-66의 section 3003을 참조한다.

미 행정위원회의 종료

미 행정위원회의 종료는 이 title의 section 591에 기재된 Pub. L. 104-52의 title IV를 참조한다.

정책의 선언과 목적의 설명

Pub. L. 94-409의 section 2는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현 가능한 최대로 일반에 부여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반면에 개인의 권리와 그 책임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위에 기재된 약칭의 주석 참조)의 목적이다.”라고 규정한다.

참고: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laws/administrative-procedure/552b.html>

<http://codes.lp.findlaw.com/uscode/5/1/5/II/552b/notes>

5 U.S.C. 552B – OPEN MEETINGS

(a)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 (1) the term “agency” means any agency, as defined in section 552(e) of this title, headed by a collegial body composed of two or more individual members, a majority of whom are appointed to such position by the President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any subdivision thereof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gency;
- (2) the term “meeting” means the deliberations of at least the number of individual agency members required to take action on behalf of the agency where such deliberations determine or result in the joint conduct or disposition of official agency business, but does not include deliberations required or permitted by subsection (d) or (e); and
- (3) the term “member” means an individual who belongs to a collegial body heading an agency.

(b) Members shall not jointly conduct or dispose of agency business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c), every portion of every meeting of an agency shall be open to public observation.

(c) Except in a case where the agency finds that the public interest requires otherwise, the second sentence of subsection (b)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an agency meeting, and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d) and (e) shall not apply to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such meeting otherwise required by this section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where the agency properly determines that such portion or portions of its meeting or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s likely to—

- (1) disclose matters that are (A)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and (B) in fact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such Executive order;

- (2) relate solely to the internal personnel rules and practices of an agency;
- (3) disclose matters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 552 of this titl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requires that the matters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B)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ters to be withheld;
- (4) disclose trade secrets and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and privileged or confidential;
- (5) involve accusing any person of a crime, or formally censuring any person;
- (6) disclose information of a personal nature where disclosure would constitute a clearly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 (7) disclose investigatory record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or information which if written would be contained in such record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duction of such records or information would (A) interfere with enforcement proceedings, (B) deprive a person of a right to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adjudication, (C)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D) disclose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and, in the case of a record compiled by a crimin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the cour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or by an agency conducting a lawful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investig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only by the confidential source, (E) disclos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procedures, or (F) endanger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 (8) disclose information contained in or related to examination, operating, or condition reports prepared by, on behalf of, or for the use of an agency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r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9) disclose information the premature disclosure of which would—

(A) in the case of an agency which regulates currencies, securities, commodit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be likely to (i) lead to significant financial speculation in currencies, securities, or commodities, or (ii) significantly endanger the stability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B) in the case of any agency, be likely to significantly frustrate implementation of a proposed agency action, except that subparagraph (B) shall not apply in any instance where the agency has already disclosed to the public the content or nature of its proposed action, or where the agency is required by law to make such disclosure on its own initiative prior to taking final agency action on such proposal; or

(10) specifically concern the agency's issuance of a subpoena, or the agency's participation in a civil action or proceeding, an action in a foreign court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an arbitration, or the initiation, conduct, or disposition by the agency of a particular case of formal agency adjudication pursuant to the procedures in section 554 of this title or otherwise involving a determination on the record after opportunity for a hearing.

(d)(1) Action under subsection (c) shall be taken only when a majority of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agency (as defined in subsection (a)(1)) votes to take such action. A separate vote of the agency members shall be taken with respect to each agency meeting a portion or portions of which are proposed to be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subsection (c), or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which is proposed to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A single vote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a series of meetings, a portion or portions of which are proposed to be closed to the public, or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concerning such series of meetings, so long as each meeting in such series involves the same particular matters and is scheduled to be held no more than thirty days after the initial meeting in such series. The vote of each agency member participating in such vote shall be recorded and no proxies shall be

allowed.

- (2) Whenever any person whose interests may be directly affected by a portion of a meeting requests that the agency close such portion to the public for any of the rea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6), or (7) of subsection (c), the agency, upon request of any one of its members, shall vote by recorded vote whether to close such meeting.
 - (3) Within one day of any vot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the agenc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a written copy of such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If a portion of a meeting is to be closed to the public, the agency shall, within one day of the vot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f this subsection, make publicly available a full written explanation of its action closing the portion together with a list of all persons expected to attend the meeting and their affiliation.
 - (4) Any agency, a majority of whose meetings may properly be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paragraph (4), (8), (9)(A), or (10) of subsection (c), or any combination thereof, may provide by regulation for the closing of such meetings or portions thereof in the event that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votes by recorded vote at the beginning of such meeting, or portion thereof, to close the exempt portion or portions of the meeting, and a copy of such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 (e)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a meeting to which such regulations apply: Provided, That the agency shall,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 provide the public with public announcement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the meeting and of each portion thereof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 (e)(1) In the case of each meeting, the agency shall make public announcement, at least one week before the meeting,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the meeting, whether it is to be open or closed to the public, and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official designated by the agency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the meeting. Such announcement shall be made unles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gency determines by a recorded vote that agency business requires that such meeting be called at an earlier date, in which case the agency shall make public announcement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such meeting, and whether open or closed to the public,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 (2) The time or place of a meeting may be changed following the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paragraph (1) only if the agency publicly announces such change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The subject matter of a meeting, or the determination of the agency to open or close a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to the public, may be changed following the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this subsection only if (A) a majority of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agency determines by a recorded vote that agency business so requires and that no earlier announcement of the change was possible, and (B) the agency publicly announces such change and the vote of each member upon such change at the earliest practicable time.
- (3) Immediately following each public announcement required by this subsection, notice of the time, place, and subject matter of a meeting, whether the meeting is open or closed, any change in one of the preceding, and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official designated by the agency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the meeting, shall also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 (f)(1) For every meeting closed pursuant to paragraphs (1) through (10) of subsection (c), the General Counsel or chief legal officer of the agency shall publicly certify that, in his or her opinion, the meeting may be closed to the public and shall state each relevant exemptive provision. A copy of such certification, together with a statement from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meeting setting forth th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and the persons present, shall be retained by the agency. The agency shall maintain a complete transcript or electronic recording adequate to record fully the proceedings of each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pursuant to paragraph (8), (9)(A), or (10) of subsection (c), the agency shall maintain either such a transcript or recording, or a set of minutes. Such minutes shall fully and clearly describe all matters discussed and shall provide a full and accurate summary of any actions taken, and the reasons therefor, including a description of each of the views expressed on any item and the record of any rollcall vote (reflecting the vote of each member on the question). All documents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shall be identified in such minutes.

(2) The agency shall make prompt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a place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the transcript, electronic recording, or minutes (as required by paragraph (1)) of the discussion of any item on the agenda, or of any item of the testimony of any witness received at the meeting, except for such item or items of such discussion or testimony as the agency determines to contain information which may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Copies of such transcript, or minutes, or a transcription of such recording disclosing the identity of each speaker, shall be furnished to any person at the actual cost of duplication or transcription. The agency shall maintain a complete verbatim copy of the transcript, a complete copy of the minutes, or a complete electronic recording of each meeting, or portion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after such meeting, or until one year after the conclusion of any agency proceeding with respect to which the meeting or portion was held, whichever occurs later.

(g)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ection,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published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of at least thirty days and opportunity for written comment by any person, promulgate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Any person may bring a proceeding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require an agency to promulgate such regulations if such agency has not promulgated such regulations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herein. Subject to any limitations of time provided by law, any person may bring a proceeding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set aside agency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that are not in accord with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and to require the promulgation of regulations that are in accord with such subsections.

- (h)(1) 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jurisdiction to enforce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b) through (f) of this section by declaratory judgment, injunctive relief, or other relief as may be appropriate. Such actions may be brought by any person against an agency prior to, or within sixty days after, the meeting out of which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arises, except that if public announcement of such meeting is not initially provided by th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uch action may be instituted pursuant to this section at any time prior to sixty days after any public announcement of such meeting. Such actions may be brought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agency meeting is held or in which the agency in question has its headquarters, or in the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n such actions a defendant shall serve his answer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complaint. The burden is on the defendant to sustain his action. In deciding such cases the court may examine in camera any portion of the transcript, electronic recording, or minutes of a meeting closed to the

public, and may take such additional evidence as it deems necessary. The court, having due regard for orderly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may grant such equitable relief as it deems appropriate, including granting an injunction against future violations of this section or ordering the agency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such portion of the transcript, recording, or minutes of a meeting as is not authorized to be withheld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 (2) Any Federal court otherwise authorized by law to review agency action may, at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properly participating in the proceeding pursuant to other applicable law, inquire into violations by the agenc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afford such relief as it deems appropriate. Nothing in this section authorizes any Federal court having jurisdiction solely on the basis of paragraph (1) to set aside, enjoin, or invalidate any agency action (other than an action to close a meeting or to withhold information under this section) taken or discussed at any agency meeting out of which the violation of this section arose.
- (i) The court may assess against any party reasonable attorney fees and other litigation costs reasonably incurred by any other party who substantially prevails in any action brough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g) or (h) of this section, except that costs may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only where the court finds that the suit was initiated by the plaintiff primarily for frivolous or dilatory purposes. In the case of assessment of costs against an agency, the costs may be assessed by the court against the United States.
 - (j)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annually report to the Congress regarding the following:
 - (1) The changes in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receding 1-year period.

- (2) A tabulation of the number of meetings held, the exemptions applied to close meetings, and the days of public notice provided to close meetings.
 - (3) A brief description of litigation or formal complaint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by the agency.
 - (4) A brief explanation of any changes in law that have affec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 (k) Nothing herein expands or limits the present rights of any person under section 552 of this title, except that the exemptions set forth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shall govern in the case of any request made pursuant to section 552 to copy or inspect the transcripts, recordings, or minutes describ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The requirements of chapter 33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shall not apply to the transcripts, recordings, and minutes described in subsection (f) of this section.
- (l) This section does not constitute authority to withhold any information from Congress, and does not authorize the closing of any agency meeting or portion thereof required by any other provision of law to be open.
- (m) Nothing in this section authorizes any agency to withhold from any individual any record, including transcripts, recordings, or minutes required by this section, which is otherwise accessible to such individual under section 552a of this title.

(Added Pub. L. 94-409, § 3(a), Sept. 13, 1976, 90 Stat. 1241; amended Pub. L. 104-66, title III, § 3002, Dec. 21, 1995, 109 Stat. 734.)

References in Text

Section 552(e) of this title, referred to in subsec. (a)(1), was redesignated section 552(f) of this title by section 1802(b) of Pub. L. 99-570.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ection, referred to in subsec. (g), means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Pub. L. 94-409, which was

approved Sept. 13, 1976.

Amendments

1995—Subsec. (j). Pub. L. 104-66 amended subsec. (j) generally. Prior to amendment, subsec. (j) read as follows: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annually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its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including a tab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gency meetings open to the public, the total number of meetings closed to the public, the reasons for closing such meetings, and a description of any litigation brought against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any costs assessed against the agency in such litigation (whether or not paid by the agency).”

Effective Date

Section 6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this Act [see Short Title note set out below] shall take effect 180 days after the date of its enactment [Sept. 13, 1976].

“(b) Subsection (g) of section 552b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s added by section 3(a) of this Act, shall take effect upon enactment [Sept. 13, 1976].”

Short Title of 1976 Amendment

Section 1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this Act [enacting this section, amending sections 551, 552, 556, and 557 of this title, section 10 of Pub. L. 92-463, set out in the Appendix to this title, and section 410 of Title 39, and enacting provisions set out as notes under this section] may be cited as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Termin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For termination, effective May 15, 2000, of provisions of law requiring submittal to Congress of any annual, semiannual, or other regular periodic report listed in House Document No. 103-7 (in which the report required by subsec. (j) of this section is listed on page 151), see section 3003 of Pub. L. 104-66, as amended, set out as a note under section 1113 of Title 31, Money and Finance.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United States

For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United States, see provision of title IV of Pub. L. 104-52, set out as a note preceding section 591 of this title.


Declaration of Policy and Statement of Purpose

Section 2 of Pub. L. 94-409 provided that: "It is hereby declared to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public is entitled to the fullest practic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is the purpose of this Act [see Short Title note set out above] to provide the public with such information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발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작지원	재단법인 동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홈페이지	www.opengirok.or.kr
이메일	cfoi@opengirok.or.kr
연락 및 후원문의	02) 2039-8361~2
팩스	02) 6919-2039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355172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 의 공익·인권단체 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